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

- 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조자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차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최근 성폭력 및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성평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이 시행된 이래 성평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공유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 학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와 의식,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성차별 및 여성 혐오 등의 공론화로 사회 통합 차원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와 중장기계획 등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성평등교육의 중장기적 방향을 정립하고, 기존의 다양한 성평등 교육을 체계화하여 생애주기별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평등스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성평등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성평등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교육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전문가, 공무원, 자문위원 모두와 연구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이 연구가 서울시 성평등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론 _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_ 9

- 1. 선행연구 검토 11
 - 1) 성평등교육의 정의 11
 - 2) 선행연구 검토 14
- 2.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 20
 - 1) 관련 법령 20
 - 2) 중앙정부 관련 정책 25
- 3. 시사점 35

Ⅲ 서울시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_ 37

1. 서울시	39
1) 서울시 성평등정책 개요	39
2) 성평등교육 현황	42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2
1) 성평등교육 추진개요	52
2) 성평등교육 현황	56
3. 시사점	68

Ⅳ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교육과 추진과제 _ 71

1.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74
1)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성평등교육 내용	74
2)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80
2. 성평등교육 관련 교사 연수 현황	85
1) 교사의 성평등교육 현황	85
2) 성평등교육 교사연수과정 현황	87
3. 학교 성폭력예방 근절 종합대책	92
1) 학생 및 교직원 성폭력 발생 현황	92
2) 학교 성폭력예방 근절 종합대책	94
4. 시사점	96

V 평등스쿨 운영방안 _ 99

1. 평등스쿨 개요	101
2. 평등스쿨 운영(안)	104
1) 전략적 교육대상	105
2) 교육방향	111
3) 교육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12
3.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	115
1) 추진방향	115
2) 주요 기능 및 역할	116
3)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 부서 설치	125

참고문헌 _ 127

Abstract _ 132

표 목차

표 I-1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	6
표 II-1	영역별 양성평등의 의미	12
표 II-2	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개념 정의와 범위	13
표 II-3	성평등교육 관련 법령 및 조례 내용	20
표 II-4	폭력예방교육 법적 근거 및 교육내용	23
표 II-5	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	25
표 II-6	중·고등학교 7대 안전교육 표준안과 교과교육과정 연계 운영사례	28
표 II-7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현황	30
표 II-8	학생 대상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32
표 II-9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주요지표	34
표 II-10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성평등교육 관련 주요 보완 과제	35
표 III-1	여성안심특별시 3.0 사업내용	40
표 III-2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중 성평등 관련 교육계획	41
표 III-3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중 신설 조항	42
표 III-4	연도별·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2013~2014)	44
표 III-5	성인권 교육 개념 및 목표	45
표 III-6	2017년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사업내용	46
표 III-7	영역별 성인권 교육 내용체계(초등학교 고학년용)	47
표 III-8	학교 성인권 교육 강사 자격 기준	48
표 III-9	2017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내용	49
표 III-10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50
표 III-11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수행기관 수행업무	51
표 III-12	중학생 성인지 이해 및 실천하기 교육구성(안)	52
표 III-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 추진현황	53
표 III-14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추진현황	57
표 III-15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교육내용	60
표 III-16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추진현황	61
표 III-17	2015 성평등시민강좌 분야 및 주요 내용	62
표 III-18	연도별 성평등시민강좌 참여 인원 현황	63
표 III-19	교육기준	64

표 III-20	유아 및 학부모 등 교육현황	65
표 III-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66
표 III-22	폭력예방교육 관련법상 교육목표 및 주요 내용	67
표 III-23	20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현황	68
표 IV-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성평등교육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75
표 IV-2	교과서 내용의 분석준거	77
표 IV-3	각급 학교별 성교육 실시 현황	80
표 IV-4	성교육 표준안의 성취목표	81
표 IV-5	폭력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82
표 IV-6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대상 기관	82
표 IV-7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83
표 IV-8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방법 분석결과	84
표 IV-9	2015년도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이수 현황	84
표 IV-10	교사 성평등교육 연수 실태	85
표 IV-11	교사가 대학 재학 당시 성평등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86
표 IV-12	성평등교육 연수 미희망 이유	86
표 IV-13	2017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교육훈련 개요	87
표 IV-14	2017 교육행정연수부 원격 교육훈련 운영계획	87
표 IV-15	2017년 교원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88
표 IV-16	2017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주요 변경사항	89
표 IV-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 직무교육과정 현황	91
표 IV-18	서울시 소재 학교 교직원 성범죄 사건 발생 현황	94
표 IV-19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중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과제	96
표 V-1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성평등교육, 평등스쿨 사업 비교	103
표 V-2	서울시 성평등교육 주요 대상	105
표 V-3	서울시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106
표 V-4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	109
표 V-5	안심귀가스카우트 최근 3년 추진실적	109
표 V-6	학교보안관 최근 3년간 교육실적	111
표 V-7	교육대상별 성평등교육 초기단계 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구성(예시)	114
표 V-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의식교육 및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예시)	117
표 V-9	생애기별 성평등 주요 이슈	120
표 V-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분야별 전문강사 위축 현황	121

Table Contents

■ 표 V-1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교육과정	122
■ 표 V-12 ■ 강사양성 교육과정 중 젠더교육 프로그램 (예시)	124

그림 목차

■ 그림 II-1 ■	성교육 표준안(2015)-학생워크북 및 교사지도서 (예시)	27
■ 그림 III-1 ■	성폭력예방교육 및 자기방어훈련	43
■ 그림 III-2 ■	교육대상 어린이집 원장 사전 간담회	65
■ 그림 IV-1 ■	성폭력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성폭력 피해학생수 현황	92
■ 그림 IV-2 ■	초·중·고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93
■ 그림 IV-3 ■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종합대책 정책추진 방향	95
■ 그림 V-1 ■	여성안심보안관 활동현황	110
■ 그림 V-2 ■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 방향	115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성평등교육은 새로운 젠더관계와 젠더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1999년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이 시행된 이래 성평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공유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 학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교육이 추진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음.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와 의식,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임.
-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성차별 및 여성 혐오 등의 공론화로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기존 ‘기반 조성’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17년 3월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은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성평등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학생 및 교사임. 교육추진방식은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나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와 중장기 계획 등은 부재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서울시 성평등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평등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등스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평등스쿨(가칭)은 다양한 성평등 이슈에 대한 강의와 모둠활동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젠더감수성 향상과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 정부의 성평등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성평등교육 현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함. 특히 서울시 성평등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평등스쿨 운영 측면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평등스쿨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전문가 인터뷰, 회의체 운영(내부 TF팀)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함. 먼저, 성평등교육 관련 선행연구로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통합연구 고찰을 통해 성평등교육 분야와 주요 이슈를 고찰함.
-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성평등교육 범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을 분석함. 이어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성평등교육 추진체계 및 한계점을 분석함
- 셋째, 서울시의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분석함. 서울시 성평등교육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관련 사업 계획 및 해당 과제 담당 주무관과 인터뷰를 통해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파악함.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은 단위사업별 착수보고서 및 최종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 넷째,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이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상황,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민원 관련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
- 다섯째, 내부 TFT와 논의과정을 거쳐 평등스쿨 운영 방안을 수정·보완함. 재단 내부 TFT 인력 구성은 임원진(여성정책실장, 가족정책실장, 경영기획실장: 3명)

및 본 과제 연구자(1명), 교육담당 부서 관계자(팀장 및 교육 담당자: 2명) 등 총 6명임. 내부 TFT는 재단 성평등교육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평등스쿨 운영 시 전략적 교육대상, 교육방향, 평등스쿨 운영체계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함. 평등스쿨 운영방안의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 폭력예방교육 관련 연구 - 성평등교육 통합 연구	- 성평등교육 분야 및 주요 이슈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령	- 성평등교육 범위 및 교육 대상, 교육내용
중앙정부 성평등교육 정책 파악	- 교육부 성평등교육 추진체계 변화, 성교육 표준안, 단위학교 안전계획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 중앙정부의 성평등교육 추진체계 및 현황 - 성평등교육의 한계점
서울시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	-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교육 단위사업계획 및 담당 주무관 인터뷰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2017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구축 사업 담당 주무관 FGI)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 관련 과제별 착수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 최근 5년간 서울시 성평등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 평등교육 추진현황 - 서울시 성평등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
학교현장의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	- 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추진실적 - 학교 성폭력 민원 분석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학교 성폭력 긴급실태조사 결과 (서울시교육청)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 사회, 도덕, 한국사 교과서의 성평등교육 내용분석 연구자료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및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교사연수과정 -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평가매뉴얼(교육부) -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종합대책 (서울시교육청)	- 학교 현장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및 문제점 -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성평등교육 내용 - 성평등교육 관련 교사 연수 실태 및 연수과정 개설 현황

□ 연구결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주요 기능인 여성정책 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교육을 실행하기보다는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중심으로 평등스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역할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평등스쿨 운영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평등스쿨 운영 방안은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접교육을 실행하는 평등스쿨 운영(안)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행하는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함.

1. 평등스쿨 운영(안)

평등스쿨 운영(안)은 교육현장에서 성평등교육을 직접 실행할 경우 전략적 교육대상, 교육방향, 교육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1) 전략적 교육대상

(1)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표 2 서울시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구분	세부대상
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1~3학년
중고등학생	중학교 2학년~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교사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2)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

표 3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

구분	세부대상
여성안심정책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학교 안전	- 학교보안관
지하철 안전	- 지하철보안관

2) 교육방향

- 젠더교육의 방향은 첫째, 젠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젠더감수성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를 말함.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성별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우리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둘째,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를 고려한 성평등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교육이어야 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젠더감수성 증진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실천적인 영역을 강조해야 함.

3) 교육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실제 교육현장에서 평등스쿨을 운영할 때 교육대상별 특성,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구성 등 접근방식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교육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의무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2017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따르면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는 성교육 15시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관련 포함), 금연·약물오남용예방 2시간, 응급심폐소생술 2시간임.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주로 보건교육 시간에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연 1회, 1시간씩 이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매우 제한적임. 더욱이 다른 교과목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성평등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현재 학교 정규교육에서 젠더교육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정규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는 성교육 의무교육시간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 둘째, 성평등교육 초기단계에는 폭력예방 관련 법정의무교육과 젠더교육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폭력예방교육 역시 통합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17 중점추진과제」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분야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중심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예방교육’으로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평등스쿨을 별도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한다면 실효성 없는 유사교육의 반복이라는 문제 제기에 봉착할 수 있음. 현재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과 젠더교육을 통합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폭력예방교육에 젠더교육을 통합하는 것이 통합적인 성평등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성평등교육은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평등교육 전략은 젠더감수성, 폭력예방, 인권, 돌봄 등의 주제별 통합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과 차별화하여 교육컨텐츠를 개발

해야 함. 또한 성평등교육은 여성의 사회문화적 종속을 제도화하는 관행과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 부정의(injustice)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함.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젠더감수성, 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등을 주제별로 통합하는 전략 역시 필요함.

-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나 도덕, 윤리 과목과 같은 정규교과목에도 성역할과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성평등교육 초기단계(약 1~2년차)에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젠더교육을 통합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2~4차시 형태의 단기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단기과정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생 반응 및 만족도, 교육신청기관 및 강사 의견, 교육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성평등교육 장기과정은 단기과정 결과를 토대로 젠더감수성, 폭력예방, 인권 등의 주제별 통합과정 또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2.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평등스쿨 운영과 같은 직접교육은 지양하고 평등스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추진전략으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학교·일터·일상에서의 성평등교육 대상별 접근 및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전개해 나감. 부처간 및 교육기관별 협력과 자문기구로 교육자문위원회 운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교육자문위원회는 재단 내부에 설치하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젠더교육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함.
-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은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연구 및 조사, 맞춤형(특성화) 강사양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함.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시범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개선점 도출에 필요한 시범교육을 일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평등스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서울시 수탁과제가 아닌 재단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함.

Ⅰ 그림 Ⅰ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 방향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조사	특성화 강사양성
추진 과제	-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 교육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재개발	- 교육대상자의 요구도 및 성인지 수준 조사 - 교육효과성 평가 - 성인지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 - 교육사례 연구	- 교육대상 및 과정별 특성화 강사 양성 - 강사보수교육
추진 전략	생애주기별 젠더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성평등 이슈별 접근 - 젠더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해와 삶속에서 실천 연결 - 성인지적 통합교육 중심 접근	
	유관기관 협력	- 서울시,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젠더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방향과 연계	-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교육 대상별 접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성평등교육은 새로운 젠더관계와 젠더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배유경, 2015). 1999년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이 시행된 이래 성평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공유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 학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교육이 추진되고 있다(김선희 외, 2010).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다(최문선, 2011).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와 의식,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7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가 94.5%로 폭력예방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2월 발표한 「학교 성폭력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7a).

2009년 교육부와 교육청 내부의 성평등 전담체계가 사라지고,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도 성평등 주제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 연수과정에서도

성평등 주제를 다루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 안에서의 성평등교육은 통합적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수연 외, 2014).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교육은 폭력예방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성평등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평등교육이 오로지 성폭력예방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어 성평등교육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학교 성폭력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예방교육으로 축소된 성평등교육이 성차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교육이 필요하다(김고연주, 2016; 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한편,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성차별 및 여성 혐오 등의 공론화로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서울시, 2017b).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기존 ‘기반 조성’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17년 3월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 2017b).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은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성평등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학생 및 교사이다(서울시, 2017b). 교육추진방식은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나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와 중장기 계획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교육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단시간의 폭력예방교육으로 채워지면서 젠더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배유경, 2015).

젠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젠더교육은 성평등교육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폭력예방교육이나 성인권교육, 성교육 등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교육은 의식교육으로 몇 번의 교육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행동으로의 전환은 더욱 어렵다. 특히, 남녀 불평등 문제는 한 세대 혹은 한 개인의 문제가 후대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2012b). 또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감지해 낼 줄 아는 젠더감수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배유경, 2015; 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최문선, 2011). 젠더교육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젠더체계를 바르게 바라보는 눈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역할과 권력관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평등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최문선, 2011).

본 연구는 서울시 성평등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존 성평등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등스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평등스쿨(가칭)은 다양한 성평등 이슈에 대한 강의와 모둠활동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젠더감수성 향상과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 정부의 성평등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성평등교육 현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성평등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평등스쿨 운영 측면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평등스쿨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전문가 인터뷰, 회의체 운영(내부 TF팀)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성평등교육 관련 선행연구로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통합연구 고찰을 통해 성평등교육 분야와 주요 이슈를 고찰한다.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성평등교육 범위, 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의 성평등교

육 추진체계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서울시의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분석한다. 서울시 성평등교육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관련 사업 계획 및 해당 과제 담당 주무관과 인터뷰를 통해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은 단위사업별 착수보고서 및 최종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넷째,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이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상황,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민원 관련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 내부 TFT와 논의과정을 거쳐 평등스쿨 운영 방안을 수정·보완한다. 재단 내부 TFT 인력 구성은 임원진(여성정책실장, 가족정책실장, 경영기획실장: 3명) 및 본 과제 연구자(1명), 교육담당 부서 관계자(팀장 및 교육 담당자: 2명) 등 총 6명이다. 내부 TFT는 재단 성평등교육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평등스쿨 운영시 전략적 교육대상, 교육방향, 평등스쿨 운영체계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등스쿨 운영방안의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 표 I-1 Ⅱ 연구수행 절차 및 내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성평등교육 선행연구	-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 폭력예방교육 관련 연구 - 성평등교육 통합 연구	- 성평등교육 분야 및 주요 이슈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령	- 성평등교육 범위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중앙정부 성평등교육 정책 파악	- 교육부 성평등교육 추진체계 변화, 성교육 표준안, 단위학교 안전계획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 중앙정부의 성평등교육 추진체계 및 현황 - 성평등교육의 한계점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서울시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	-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교육 단위사업계획 및 담당 주무관 인터뷰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2017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구축 사업 담당 주무관 FGI)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 관련 과제별 착수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 최근 5년간 서울시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 서울시 성평등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
학교현장의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	- 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추진실적 - 학교 성폭력 민원 분석결과(국민권익위원회) - 학교 성폭력 긴급실태조사 결과(서울시교육청)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 사회, 도덕, 한국사 교과서의 성평등교육 내용분석 연구자료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사연수과정 -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평가매뉴얼(교육부) -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종합대책(서울시교육청)	- 학교 현장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및 문제점 -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성평등교육 내용 - 성평등교육 관련 교사 연수 실태 및 연수과정 개설 현황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I 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내용 등 연구개요를 밝히고, II 장은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 정부의 성평등 교육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III 장에서는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성평등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IV 장은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성평등교육 내용,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교사들의 성평등교육 및 교사연수과정 현황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종합근절 대책 등을 검토하고 평등스쿨 운영 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V 장은 결론 부분으로 선행연구, 중앙정부의 성평등교육 정책, 서울시 및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평등스쿨 운영(안)과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성평등교육의 정의

오늘날 성평등교육은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주체와 교육현장에서 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평등 문화 실현, 성차별 관행 개선 등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배유경, 2015).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는 폭력예방교육과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성관계·가족·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김선희 외, 2012; 배유경, 2015; 정해숙 외, 2013; 홍선영 외, 2012).

현행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gender equality)’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이수연 외, 2016; 홍선영 외, 2012). 이수연 외(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구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전자가 ‘양성’ 즉 두 가지 성 사이의 평등을, 후자는 두 성 뿐만 아니라 제3의 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희망 또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재인·송인자(2006)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의 순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홍선영 외, 2012 재인용).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에서는 '양성평등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래 ■표 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정치, 교육, 가정 등 모든 사회 영역별로 성불평등 문제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 영역별로 양성평등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제1조의2)는 성평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II-1■ 영역별 양성평등의 의미

구분	세부내용
경제	- 경제활동참가율, 임금, 관리자 및 임원 비율 등에서 성별 격차 해소 - 직업과 직종에서 성별 분리 완화
정치	-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와 성별 대표성 확보
교육	-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공 선택 문제 해결
가정	- 성별 역할과 책임 분리 해소

자료: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교육 개념 및 교육범위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선희 외(2010)에 의하면, '성평등교육'은 교육 명칭 또는 교육목적에 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말하며, 그 안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교육, 성희롱예방·성매매예방·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홍선희 외(2012) 역시 성평등교육 범위에 양성평등,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6), 정해숙 외(2013)는 ‘양성평등교육’을 이성관계, 가족, 직장, 일상생활 등 사회제도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성평등교육에 포함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갑숙·정미미(2007), 배유경(2015)은 ‘성평등교육’ 대신 ‘양성평등교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성평등교육에 포함된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의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교육(제18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교육(제30조, 제31조), 양성평등교육(제36조)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평등교육’을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인지력향상교육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평등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성평등교육’에 포함되는 협의의 교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표 Ⅱ-2 Ⅱ 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개념 정의와 범위

선행연구	개념정의와 교육의 범위
김재춘·황석순 (1999)	양성평등교육은 ①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②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 ③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한시적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6)	양성평등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며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도록 촉진하는 교육이다.
이갑숙·정미미 (2007)	양성평등교육이란 우리 사회가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에서의 접근 기회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등 교육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의 범위는 양성평등의식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전문상담 교육을 포함한다.
김선희 외(2010)	성평등교육은 성평등의식 함양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하며,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	개념정의와 교육의 범위
홍선영 외(2012)	성평등교육은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게 하여 양성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 해소하고 평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용에 있어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한다.
정해숙 외(2013)	양성평등교육이란 이성관계, 가족, 직장, 일상생활 등 사회제도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배유경(2015)	양성평등교육은 의식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 성교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자료: 배유경(201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재구성.

2) 선행연구 검토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폭력예방교육 연구, 성평등교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평등교육 분야별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가에서도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9월 보건교과가 정규과목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서 제시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과 내용은 건강의 이해와 건강생활, 질병 예방과 관리,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 성과 건강, 정신건강, 사회와 건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교육 영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성과 건강, 질병 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의 순이다. 고등학교는 성과 건강, 질병예방과 관리,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순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두 ‘성과 건강’ 영역에서 가장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이정열 외, 2010).

성교육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입시 위주의 지식 중심 교

과목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시간 자체가 많지 않고, 성 관련 내용이 도덕, 과학, 사회, 기술, 가정, 체육 등 여러 교과목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현숙, 2012; 양야기, 2012).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성관련 범죄가 증가되면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역할이 주목되고 있으며 학교 성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과 변화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혜정, 2013).

이규영(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자중학생 대부분은 학교 성교육을 거의 다 받았으나 실제 성지식 점수는 22점 만점에 평균 11.28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성지식을 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닌 대중매체와 친구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통신 매체로부터 습득한 지식은 흥미위주의 불확실하고 그릇된 성지식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왜곡된 성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양야기, 2012). 고등학생들이 음란매체를 통하여 음성적으로 성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성교육 교사들을 위한 전문교육 역시 요구되고 있다(이규영, 2015).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하에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성 발달단계 및 신체구조 등과 관련된 생리학적인 지식과 성건강 정보 전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유진숙(2015)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성적자기결정권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성교육은 가치 중립적인 견해와 해석 전달에 치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적 결정을 청소년 개인의 선택과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성적자기결정권이 암묵적으로 전제될 때 임신, 성매매, 낙태, 성폭력 등 성행동의 선택과 결정,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되며 학교나 사회는 그들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성폭력예방에 성교육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성폭력예방교육이 성교육으로 등치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에 매몰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수연 외, 2014;정해숙 외, 2013).

이수연 외(2014)는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활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성교육 내용만 지나치게 강조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대로 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폭력예방교육 관련 연구

WHO는 자신이나 타인 혹은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리적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상해나 사망, 심리적인 손상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을 때 이를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개인과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폭력예방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4).

1999년 성희롱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2004년 성매매예방교육, 2006년 가정폭력예방교육, 2010년 성폭력예방교육이 차례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또한 잇따르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이러한 4개 분야의 교육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현경, 2015).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성폭력예방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보건 교과목 시간에 성교육과 연계하여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정해숙 외(2013)는 성폭력, 성매매 등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이는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회문제가 성불평등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은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차별적 사회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예방 대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남학생은 가해자라는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혜숙(2010)은 교육참여자의 부정적 정서가 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교육참여자는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으로 불쾌한 정서를 형성하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교육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육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일회성 교육과 대규모 강연식 강의를 지양하고,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상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사례 제공과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현경(2015)은 성폭력예방교육이 몇 가지 법적, 의학적 조치나 ‘싫어요, 안 돼요’를 외치라고 일러주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성폭력예방교육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이후 인생에서 문제적인 성적 상황에 직면할 때 구체적인 준거가 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방식은 일방적인 법 조항 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을 되돌아보고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 횟수 및 교육시간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데이트 폭력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명백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은숙·강희순, 2014).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고정관념, 왜곡된 성문화,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서경현 외, 2010; 이은숙·강희순, 2014; 이화숙, 2016; 정현미, 2009).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이은숙·강희순, 2014).

이은숙·강희순(2014)의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성이 성폭력 인식과 성폭력 허용도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왜곡된 성규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서 젠더감수성이 폭력예방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밝힌 이화숙(201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학교 폭력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권력 관계에 의한 폭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경험이 높을지라도 젠더감수성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데이트 폭력 가해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성평등교육 통합 연구

통합교육은 하나의 철학이며 교육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단편적인 경험이 아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개념은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20년대에서 1950년대에 존듀이(John Dewey, 1859~1952)에 의하여 학습 경험의 통합 및 교육과정의 통합을 중요한 논제로 다루면서 시작되었다(김어진, 2016).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합교육은 지나친 개별 교과 중심의 교육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인간을 길러냄으로써 교육이 전인적인 인간과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문제, 인간관계, 윤리문제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각 학문 분야의 분리된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습득되기 어려우며, 보다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서영민·이영준, 2013).

성평등교육에서도 이러한 통합교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될 수 있도록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각종 예방교육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의 통합 필요성이 성평등교육기관과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배유경, 2015; 정해숙 외 2013; 정현미, 2012).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무교육이 갖고 있는 산만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시민대상의 각종 폭력예방교육도 통합교육으로 개편되고 있다(배유경, 2015).

정현미(2012)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각종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불관용 및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 배양이라는 공통적인 가치와 목표 하에 통합될 수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폭력예방교육을 통합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평등 관점에서의 교육’이란 여성과 남성 간 사회적 차별이나 서로 다른 경험·이해에서 오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지위·권력의 차이가 폭력 및 사회적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권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이수연 외(2016)는 현재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통합하여 범교과내용을 재구성해야 하며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와 비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1)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이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각각 따로 실시하지 않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성인권교육, 성인권 통합교육, 성인지적 예방교육 등으로 문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이 지식전달위주의 성교육에 그치거나 문제유형별로 흩어져서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모두 통합하여 실시하고 청소년의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으로 이 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배유경, 2015).

2.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

1) 관련 법령

성평등교육의 법률적 토대는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및 동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기초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3).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인지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 실시를, 동법 제30조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36조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는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3 성평등교육 관련 법령 및 조례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교육 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 교육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와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구분		세부내용
양성평등 기본법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 장관과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성인지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제1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1항에

구분	세부내용
기본법 시행령	다른 성인지(性認知)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 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성인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성인지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제19조 (성희롱 예방교육)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행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폭력예방교육은 각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서, 성매매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기초하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조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사업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b;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표 II-4 | 폭력예방교육 법적 근거 및 교육내용

구 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 (1.31 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11.10월 시행) -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13.6월 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구 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대상	필수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시행령에 명문화 - 중·고등학생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선택		학부모	초·중·고·대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부모	초·중·고·대학생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아동) -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아동) -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재구성.

2) 중앙정부 관련 정책

(1) 교육부

교육부의 성평등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 성평등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된 것은 부처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면서 교육부에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성평등교육 독려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배유경, 2015; 정해숙 외, 2013).

1990년대 성평등교육정책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성평등성 확보가 일차적 관심사였다. 기술이나 가정 과목처럼 성별 편향성을 띠고 있는 교과내용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서에 나타나는 성불평등한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교과과정에 성평등교육을 담아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개발 및 교원연수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보건법 개정,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성평등교육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성평등교육은 다방면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배유경, 2015; 이수연 외, 2014).

표 II-5 | 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

구분	교육부	여성가족부
1980년대	교육 성불평등 연구 제5차 교육과정 개혁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정무장관(제2)실 설치
1990년대	제6차 교육과정 개혁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여성특별위원회
2000년대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보건법 개정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여성부 신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각종 예방교육 의무화
2010년대	-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자료: 배유경(201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재구성.

그러나 2008년 이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었으며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부의 성평등교육정책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담부서 체제가 사라지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중앙 지원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등 성평등교육 추진체계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교육부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바로잡고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가 성교육표준안(2015)을 일선 학교에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다(김대유, 2016). 그러나 학교에서 이를 적용하기도 전에 국가 성교육표준안은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성교육표준안의 일부 내용 중에는 ‘이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지 않는다’ 등과 같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 한 문구와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피하라’,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성평등교육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경진, 2016; 최민지, 2016).

국가 성교육표준안의 문제점 및 쟁점을 김대유(2016)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내용상의 문제다. ‘아빠와 엄마의 성고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오히려 성역할을 잘못 인식시킬 수 있으며, 성폭력의 개념을 남성 성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성폭력을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성폭력 관련법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의 문제를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임신, 성병 등 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성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절차 및 시행의 정당성 시비다.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이 정당한 의론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현장의 보건교사들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주장하여 쟁점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교육부는 해당안을 학교 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하였으나 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은 젠더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 가족, 인권 등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변화하는 젠더의식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이수연 외, 2016).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 표준안 운용실태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성교육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 마련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경진, 2016).

Ⅱ 그림 II-1 Ⅱ 성교육 표준안(2015)-학생워크북 및 교사지도서 (예시)



자료: EBS NEWS(2015. 9. 5.)

또한 2017년 2월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운영 모델’로 「교과(학과) 교육과정과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의 교과(학교) 교육과정 연계 운영 기본 방침은 초·중등학교에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이하 ‘안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교육부, 2017).

학교급별 안전교육의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는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Ⅱ 표 II-6 Ⅱ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교 1학년은 도덕과 및 체육과에서, 2학년은 체육과, 3학년은 과학과 및 체육과 관련 단원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대처법 등을 지도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사회과에서, 3학년은 국어과에서 성폭력예방방법 및 유괴예방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대처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과단원에서 실제 다루어지는 교육주제 및 세부내용과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게 된다. 아래 Ⅱ 표 Ⅱ-6 에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체육과의 ‘전통표현 활동 이해하기’ 단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표현 활동(예: 전통무용, 발레 등)과 가정폭력예방 및 대처방법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표현 활동의 특성, 전통표현 활동의 역사와 가정폭력예방 및 대처방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당 교과교사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관련 전문강사로서 전문성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교육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즉, 폭력예방교육이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폭력을 인식하고 피해·가해 당사자 및 주변인 통합 관점에서 폭력상황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개별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7b;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Ⅱ 표 Ⅱ-6 Ⅱ 중·고등학교 7대 안전교육 표준안과 교과교육과정 연계 운영사례

구분	학년	과목	안전영역	중분류	단원명	지도내용
중 학 교	1	도덕과	폭력 및 신변안전	가정폭력	I. 2.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 언어폭력 예방법 정확히 알기 - 언어폭력 예방하기 -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해결 방법 토의
			폭력 및 신변안전	가정폭력	II.2.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려면?	-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예방
			폭력 및 신변안전	성폭력	II.3 청소년기 성과 사랑에 대한 태도는?	- 서로 존중하는 관계 - 성폭력 예방
		체육과	폭력 및 신변안전	성폭력	건강과 체력	- 청소년기 성 문화 이해하기 - 성폭력의 유형별 예방 방법 및 대처 행동 이해하기
	2	체육과	폭력 및 신변안전	성폭력	건강과 체력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이 해 - 스포츠와 양성평등

구분	학년	과목	안전영역	중분류	단원명	지도내용
	3	과학과	폭력 및 신변안전	성폭력	Ⅳ.생식과 발생 3.사람의 생식과 발생	-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체육과	폭력 및 신변안전	가정폭력	전통표현 활동 이해하기	- 전통 표현 활동의 특성 - 전통 표현 활동의 역사 -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고 등 학 교	2	사회과	폭력 및 신변안전	성폭력	Ⅴ.사회 생활과 법. 2. 범죄	- 성폭력과 유괴의 정의 및 특 징, 예방 방법
	3	국어과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교육)	성폭력	Ⅲ.02. 설득을 위한 화법 (2)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토 의와 역할극을 통해 성폭력 및 유괴 예방법과 대처방법

자료: 교육부(2017), 교과(학교) 교육과정과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연계 운영방안.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스스로 양성평등교육과 환경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 자체진단용 평가지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양성평등교육 평가는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의 양성평등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스스로 양성평등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점과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서열화를 목적으로 평가를 활용할 경우 부진한 평가를 받은 학교는 다음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류 작업에만 몰두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열화 평가보다는 학교별로 자체 진단을 통해서 강점은 발전시키고 약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가방식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b; 옥일남 2015b).

표 II-7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현황

대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제 I 영역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학교의 문화와 환경	1. 학교의 조직 문화	1. 학교장 대상 양성평등 연수 현황 2. 교사 성별 대비 부장교사 이상 직급의 성별 비율 3. 교사 성별 대비 주요 위원회의 교사 위원 성별비율 4. 교사 성별 대비 교사의 부서별 업무 분장에서 성별비율 5. 교사 성별 대비 교사의 학년별 담임 배정에서 성별비율 6. 교직원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양성평등 7.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에서의 양성평등 8. 학생자치회 구성의 양성평등 9. 학생동아리 구성의 양성평등 10. 학교운영위원회 등 참여 학부모의 성별 비율 11.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2. 학교의 물리적 환경	12. 양성평등교육 자료 게시 및 홈페이지 탑재 13. 화장실 변기수 등 시설에서의 양성평등 14. 양성평등한 교직원 휴게실 설치 15. 탈의실 시설에서의 양성평등
제 II 영역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학교의 교육계획과 프로그램	3. 학교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	16. 학교교육 목표에서의 양성평등 강조 17. 양성평등교육 관련 학생 행사 계획 18. 양성평등교육 시간 확보 계획 19.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 계획 2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계획 21.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 및 이용
	4.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22. 양성평등 관련 직무 연수를 받은 교직원 비율 23. 양성평등 관련 교직원 대상 학교 자체 연수 실시 횟수 24.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배치 25.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분석 및 수업 반영 논의
	5.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26. 수업에서 양성평등 내용 교육실시(교과 연계) 27. 수업에서 양성평등 내용 교육실시(창의적 체험활동) 28. 양성평등 관련 학교 행사 운영 29. 양성평등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 30. 양성평등 문화를 반영한 수업 실시 31. 학생대상 학교의 양성평등 현황 조사 및 반영 논의
	6.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32.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33.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안내 자료 발송

자료: 교육부(2015),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개발연구.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는 2개 대영역과 6개 중영역, 33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 대영역을 살펴보면, 제Ⅰ영역(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와 환경)은 학교의 조직문화와 물리적 환경을 평가한다. 제Ⅱ영역(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계획과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계획과 실행,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중 학생 대상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학교 교육목표에서의 양성평등 강조' 지표는 학교의 당해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에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양성평등교육 의지가 교육목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둘째, '18.양성평등교육 시간 확보 계획' 지표는 학교의 당해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에 학년별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교육을 일정시간(성교육 시간 제외)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셋째, '26.수업에서 양성평등 내용 교육 실시(교과 연계)' 지표는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양성평등 내용을 당해 학년도 수업에서 1시간 이상 교육한 교사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넷째, '27.수업에서의 양성평등 내용 교육 실시(창의적 체험활동)' 지표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 이루어진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교육부, 2015a).

그러나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16.학교 교육목표에서 양성평등 강조' 지표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학습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실제 학습현장에서 그러한 학습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지 서류상 목표 기술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 둘째, '17.양성평등교육시간 확보 계획' 지표는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시간을 일정시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계획서'에 양성평등교육을 일정 시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 지표 역시 서류상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셋째,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의 실효성 부분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의무교육시간은 확대되고 있으나 양성평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외 2013).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자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 등 상위 해당 부처에서 전체적인 학교평가와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8 학생 대상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16. 학교교육 목표에서 양성평등 강조	양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	4점
	양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지 않은 경우	0점
17. 양성평등교육 시간 확보 계획	2(4~5)개 학년 이상 학년별 1년간 5시간 이상 명시한 경우	7점
	2(4~5)개 학년 이상 학년별 1년간 3~4시간 명시한 경우	5점
	2(4~5)개 학년 이상 학년별 1년간 1~2시간 명시한 경우	4점
	1(2~3)개 학년 대상 1년간 5시간 이상 명시한 경우	3점
	1(2~3)개 학년 대상 1년간 3~4시간 명시한 경우	2점
	1(2~3)개 학년 대상 1년간 1~2시간 명시한 경우	1점
	양성평등교육 시간 전무한 경우	0점
26. 수업에서 양성평등 내용 교육 실시 (교과 연계)	도덕교과에서 양성평등 가치관 교육 실시	전체 9단계평가 -교과에서 양성평등 내용을 수업한 교사가 40%이상인 경우: 9점, 5% 미만: 1점
	국어교과에서 양성평등 관련 글짓기, 글 읽기, 책 안내 등 교육 실시	
	사회(역사포함) 교과에서 양성평등한 가치, 사고관, 사회문제, 여성사 교육 실시	
	기술·가정(실과) 교과에서 양성평등한 가정활동, 직업활동 안내 등 교육 실시	
	체육(보건 포함) 교과에서 양성평등한 체육 활동 실시	
	※ 단, 성교육을 하는 시간은 양성평등교육 내용 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27. 수업에서 양성평등 내용 교육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건, 인물, 소재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0점
	2(4~5)개 학년 이상 학년별 1년간 5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2(4~5)개 학년 이상 학년별 1년간 3~4시간 실시한 경우	
	2(4~5)개 학년 이상 학년별 1년간 1~2시간 실시한 경우	
	1(2~3)개 학년 대상 1년간 5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1(2~3)개 학년 대상 1년간 3~4시간 실시한 경우	
	1(2~3)개 학년 대상 1년간 1~2시간 실시한 경우	
	양성평등교육 시간 전무한 경우	0점

자료: 교육부(2015), 양성평등교육 매뉴얼.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988년 신설된 정무장관실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2001년 여성부로 설립되었다. 2005년 여성가족부로 직제가 개편된 이래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부가 추진할 정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 평등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교육이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2).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1997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까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 등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김양희 외, 2001; 여성가족부, 2012).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기본목표는 건강한 가정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주요성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 「기술·산업」교과를 「기술·가정」교과로 통합하는 등 성평등한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여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여성부, 2002). 이어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대상별로 전문화된 의식교육,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사의 성인지적 교수능력 신장, 교육과정의 성평등성 강화, 학교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체계를 강화하였다(여성부, 2002). 또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교육 활성화, 일반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08).

표 II-9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주요지표

대과제	중과제	주요지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성별임금격차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분담률 - 육아휴직자 남성비율 - 취업남성의 가사분담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보장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여성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발생 건수 -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비율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여성노인 빈곤율 -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비양육부모의 정기적 양육비 이행률 -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	- 국회의원 여성비율 - 지방의회의원 여성비율 -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 셋째자녀 출생성비 - 성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여성의 평생교육참여율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국가성평등지수

자료: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를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성평등교육 주요 보완 과제로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양성평등교육 강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그러나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확대 등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는 정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정책은 부족하며, 가정, 직장에서의 남녀 간 역할 차이, 성별고정관념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표 II-10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성평등교육 관련 주요 보완 과제

대과제	주요 보완과제
양성평등 문화확산	- 유아 및 초·중·고 양성평등교육강화 • 누리과정·양성평등 내용 포함, 대상별 양성평등교육과정 개발·보급 - 교원 양성·연수과정에 양성평등 내용 포함 권고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 폭력예방교육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 민간사업장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 전문인력,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업무담당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3. 시사점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성평등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성평등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인다. 학교현장에서는 성평등교육이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의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역시 성평등교육을 우리사회에서 제도시키는데 주력하였지만 지금의 제도화 방식으로는 교육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현재의 성평등교육은 교육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단시간의 폭력예방 의무교육으로 채워지면서 젠더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진다(배유정, 2015).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권익증진국내 폭력예방교육과가 있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과의 업무는 ‘성폭력’과 ‘예방’에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성평등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평등교육이

오로지 성폭력예방에만 매몰되고 있어 성평등교육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한편, 앞서 살펴본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부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평등스쿨 운영 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학교 성폭력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축소된 성평등교육이 성차별과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교육이 필요하다(김고연주, 2016; 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따라서 평등스쿨의 주요 교육방향은 젠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를 고려한 성평등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 교육에도 확대되고 있다. 2018년부터 일반시민 대상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기존에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등 분야별 교육에서 성평등교육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7d).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학교 등 공공부문(의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역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 교육 등을 통합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성평등교육 관련 교육의 수적 나열은 유사교육의 반복이라는 문제 제기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스쿨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교육의 통합적인 교육체계화와 일관된 교육방향, 교육대상자에 게 맞는 사례연구가 필요하다(배유경, 2015; 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정현미, 2009). 또한 통합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대상자와 교육단계별로 교육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젠더관점이 통합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등스쿨을 운영할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과목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수업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배유경, 2015; 이수연 외, 2014).

III

서울시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1. 서울시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1. 서울시

1) 서울시 성평등정책 개요

2013년 ‘당신이 있어 안심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는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폭력예방 및 지원대책 등 여성안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예방’을 시도하였으며, 사람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안심귀가스카우트와 같은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였다(서울시, 2015).

서울시는 여행(女幸)프로젝트로부터 도시에서의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 제56차 UN CSW 총회 주제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종식’과 연계하여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안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4년은 지역별로 안전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에서의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가 개발했다. 여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는 2015년 UN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자리 잡았다(조영미, 2015).

2017년 3월 서울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기본조성’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하여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은 ① 기반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② 민간협업체계 구축, ③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추진과제로는 ① 사회 전반 성평등 인식확산 및 성평등 문화조성(평등 서울), ② 여성인격 침해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존중 서울), ③ 재난·재해 대응강화 및 여성안심특별시 2.0 내실화 추진(안전 서울) 등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①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강화, ② 서울형 성평등교육 교재 개발, ③ 현장활동가 양성·운영활성화, ④ 데이트 폭력 방지대책 강화, ⑤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 추진, ⑥ 여성 재난, 재해 대응력 강화 등으로 6개 주요사업 중 3개 사업이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울시, 2017b).

표 Ⅲ-1 여성안심특별시 3.0 사업내용

3개분야	세부 사업내용	
평등서울 (사회전반 성평등인식 확산 및 성평등 사회문화조성)	학교	- 성평등교육 담당 현장활동가 90명까지 양성
		-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명
		- 교사·학부모 총 7천명 성인지 강화교육
		- 서울형 ‘성평등교육 교재’ 연내 발간
	직장	- 시 전부서 ‘젠더담당자’ 지정·운영 - 직장맘지원센터 '18년까지 4개 권역별로 확충
	일상	- 성평등 이미지 이모티콘 하반기 제작, 카카오톡 등 통해 무료 배포
존중서울 (여성인격침해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근절)		- 지자체 최초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구제 전문기관 운영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 안내 제작·배포
안전서울 (재난·재해 대응 강화 및 여성안심특별시 2.0 내실화 추진)		- 24시 스마트 여성 안심망 ‘안심이’ 앱 4월 서비스 개시(4개구)
		-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등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여성안전 체험교실 확대 등 재난·재해·대응력 강화

자료: 서울시홈페이지(여성안심특별시 3.0).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은 표 Ⅲ-1 및 표 Ⅲ-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 인권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중심의 성인지 강화교육은 ‘2017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사업’의 일환이며,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여성폭력예방교육(2013~2014), 학교 성인권교육(2014~현재),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2013~현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014~현재) 등이 있다.

표 III-2 |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중 성평등 관련 교육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관	추진방법
중학교	- 자율학기에 따른 중학교 1학년생 - 동아리 활동 2, 3학년생	20,000명	민간전문기관 (공모선정)	- 교육방법: 토론식 및 강의식 병행 - 교육내용 및 횟수 • 성인지이해 및 사례 중심 토론 • 학급당 연 5회 이상 실시
학부모 /교사	- 소통 및 참여가능한 학부모(소그룹) - 성인지 인권교육 실시 중학교 교사	1,000명	민간전문기관 (공모선정)	- 교육방법: 연수, 워크숍, 간담회 - 교육내용 • 젠더와 마주하기, 성평등 관점에서 다루기 등

자료: 서울시(2017),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한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2017년 9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젠더자문관 운영규정 신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 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연장,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제13조(젠더자문관 운영), 제42조 및 43조(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다. 서울시는 젠더자문관(2015.10.)과 젠더정책팀(2017.1.)을 신설하고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젠더자문관의 업무는 성인지 강화계획 수립, 주요사업 추진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사회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지난 9월 4일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으며²⁾, 선정된 수탁기관은 향후 2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2)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여성사회교육원이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980호).

【 표 III-3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중 신설 조항

구분	세부내용
제13조 (젠더자문관 운영)	①시장은 시장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2.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 4. 주요사업 추진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제42조 (성평등활동 지원센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 (성평등활동지 원센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 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여성NGO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료: 서울시공고(제2017-148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성평등교육 현황

서울시 성평등교육 현황은 서울시 성평등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진행된 성평등교육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본다. 서울시 성평등교육은 여성폭력예방교육,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 사업 등이 있다. 분석 대상자료는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성평등교육 관련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보도자료, 서울시 여성정책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결과 등이다.

아울러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 사업은 담당 주무관(여성정책담당관,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교육대상, 교육내용, 추진방법 등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위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1) 여성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은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타파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이 발생한 후의 피해자 지원조치를 취하기보다 예방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폭력예방교육은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조영미 외, 2015).

여성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 왔다. 초·중·고 여학생 및 성인 여성에게 위기 발생시 필요한 자기방어와 폭력대처법을 알려주는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공기업, 군부대까지 직접 찾아 가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

그림 III-1 | 성폭력예방교육 및 자기방어훈련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3. 5. 21.)

여성폭력예방교육은 2013년에는 82,078명이 이수하였으며, 2014년은 351,7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여성 인구 대비 이수율은 2013년 1.56%에서 2014년 6.69%로 늘어나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 사업 중 가장 참여자가 많다. 2014년은 구별로 이수자 수나 인구 대비 교육 이수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은 구별 교육생수가 2,000명~3,000명 사이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서대문구 교육생 수가 75,051명으로 여성 인구 대비 45.38%가 교육을 받았다. 다음으로 중구는 17,954명(26.30%), 종로구 19,697명(23.48%)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송파구는 26,413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인구 대비로는 7.69%이다. 교육 이수생수와 인구 대비 참여비율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이 많아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들이 교육생에 포함된 것에 기인한다(조영미 외, 2015).

표 Ⅲ-4 연도별·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2013~2014)

(단위: 명, %)

자치구	2013년			2014년		
	교육생수	여성 인구수	이용률	교육생수	여성 인구수	이용률
총계	82,078	5,261,704	1.56%	351,793	5,260,580	6.69%
종로구	2,493	84,656	2.94%	19,697	83,905	23.48%
중구	2,410	68,862	3.50%	17,954	68,275	26.30%
용산구	2,482	128,951	1.92%	12,603	127,867	9.86%
성동구	2,978	153,762	1.94%	11,706	152,742	7.66%
광진구	2,438	193,855	1.26%	8,811	192,364	4.58%
동대문구	3,508	188,278	1.86%	9,872	188,681	5.23%
중랑구	2,673	210,847	1.27%	8,754	212,233	4.12%
성북구	2,630	247,119	1.06%	8,750	242,952	3.60%
강북구	2,508	173,375	1.45%	9,287	171,857	5.40%
도봉구	2,651	182,684	1.45%	8,766	180,406	4.86%
노원구	6,530	304,060	2.15%	9,562	300,359	3.18%
은평구	2,806	259,389	1.08%	8,759	257,297	3.40%
서대문구	3,250	166,753	1.95%	75,051	165,384	45.38%
마포구	3,591	202,224	1.78%	8,767	205,113	4.27%
양천구	2,806	250,211	1.12%	8,760	247,617	3.54%
강서구	2,518	292,949	0.86%	8,751	301,812	2.90%
구로구	4,529	224,474	2.02%	19,239	227,040	8.47%
금천구	2,720	125,512	2.17%	10,689	125,554	8.51%
영등포구	3,315	209,160	1.58%	8,770	209,175	4.19%
동작구	3,941	214,264	1.84%	8,758	213,299	4.11%
관악구	3,431	264,616	1.30%	9,648	263,277	3.66%
서초구	2,648	230,770	1.15%	14,647	235,179	6.23%
강남구	3,967	295,569	1.34%	8,756	303,364	2.89%
송파구	4,109	344,925	1.19%	26,413	343,486	7.69%
강동구	5,146	244,439	2.11%	9,023	241,342	3.74%

자료: 조영미 외(2015). 서울시 여성정책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 학교 성인권 교육

학교 현장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업 시수 확보 및 전문프로그램 부족으로 성평등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학교 성인권 교육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연계한 통합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7a).

여성가족부는 2011년 경기와 충남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성인권 교육을 시범운영 하였다. 2012년은 4개 지역(경기·충남·경북·전북)에서, 2013년 5개 지역(경남·전북·경북·충남·제주), 2014년 7개 지역(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전북·제주), 2016년 8개 지역(서울·부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으로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매칭사업으로 학교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성인권’이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서의 인권을 의미하는 조작적 개념이다. 좀 더 구체화하면, ‘성인권’은 성적 권리에³⁾ 근거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지 않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a).

표 Ⅲ-5 | 성인권 교육 개념 및 목표

성인권의 개념	성인권교육의 목표
성적권리에 근거하여 공적·사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받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기타 법이 보호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적정체성 및 성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적권리에 근거하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식·태도·기술을 익힌다

자료: 여성가족부 외(2013).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교수·학습안.

3) 성적 권리라든가 젠더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충분히 표현하고 향유할 권리 모두를 의미한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a).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성인권 교육은 매년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학교 성인권 교육 사업수행기관 신청자격요건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학교 성인권 교육을 수행·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이다. 운영기관 역할은 아래 ■ 표 Ⅲ-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 섭외,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슈퍼비전 제공, 체험형 교육지원, 학교 운영지원 점검,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다.

서울시의 학교 성인권 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이 교육대상이며, 연10~20차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목표 인원은 10차시 기준으로 1,677명(연 16,770)이며, 15개 학교(42개반)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서울시 공고 2017-120호).

■ 표 Ⅲ-6 ■ 2017년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사업내용

구분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교육대상	- 폭력교육실적 부진기관 우선 - 초등학교 4~6학년
기본운영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교수 학습안」 등에 따라 체험형 교육 포함 연 15차시 내외 교육
교육목표인원	- 15개 학교 이상 - 42개 반 이상 - 1,677명(연인원 16,770명 ※10차시 기준)
운영내용	- 보건교사 등 성교육 담당자 슈퍼비전 제공(1회 이상, 총 6시간 이상)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2017년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차시별 운영일지 및 교안 작성, 학교별 결과보고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특성화 사업 결과보고서 등 학교 성인권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 보급 - 체험형 교육 지원 및 특성화사업 추진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은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배치된 초등학교 1개교 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서울시공고(2017-120호), 2017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

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교수·학습안」 및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핸드북」(2013)을 표준 교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인권 교육은 성인권, 성평등, 관계와 소통, 성적인 위협, 체험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7 | 영역별 성인권 교육 내용체계(초등학교 고학년용)

영역	내용
성인권	성인권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됨
성평등	성평등은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성차별을 깨달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인지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성평등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구성됨
관계와 소통	인권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이해, 점검하고 타인과 소통의 중요성을 알며 인간사회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체험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됨
성적인 위협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인 위험들이 어떤 것인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에서 교육하고, 아동 스스로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 위협에 빠져들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됨
체험활동	성적인 존재로서의 몸 이해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형 성교육내용으로 구성됨

자료: 여성가족부 외(2013),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교수·학습안.

강사 자격기준은 아래 표 III-8 |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보건교사, 학교 성인권 교육 지역지원기관의 내부 임직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다.

표 Ⅲ-8 학교 성인권 교육 강사 자격 기준

- ① 학교 보건교사
- ② 학교 성인권 교육 지역운영기관 내부 임직원(최소 1년 이상 근무자)
- ③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및 관리)
- ④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⑥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⑦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⑧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중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준용, 제56조의 취업제한대상자는 강사와 사업담당자 등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 형성 및 성폭력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인천, 대전, 경기, 경남 등 4개 시·도를 중심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이 시범 실시되었다. 2013년에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12개 시·도에서 운영되었으며, 2014년 14개 시·도, 201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17a).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성인권 교육과 마찬가지로 매년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신청자격조건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수행·관리할 능력이 있고 강사 인력풀을 갖춘 기관·단체 등이다. 운영기관의 역할은 학교 및 기관 섭외, 강사 및 학부모 워크숍, 성인권 교육 진행,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이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의 핵심대상은 특수학교,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이며,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목표 인원은 총249명(연인원 2,490명)이며, 지적장애 9개 그룹, 기타장애 3개 그룹 이상이다(서울시, 2017a).

표 Ⅲ-9 2017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내용

구분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육대상	- 장애 아동, 청소년 - 핵심대상: 특수학교,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
기본운영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매뉴얼」에 따라 10차시 예방교육 실시
교육목표인원	- 지적장애 9그룹 이상 - 기타장애 3그룹이상(중복장애 2그룹 이상 필수운영) - 총 249명(연인원2,490명)
운영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수업실시 - 교육인원은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1그룹 당 평균 6명) ※ 중복장애 그룹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최대 8명 이하 - 대상 학교 등 선정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폭력교육실적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지정 운영기관 외에도 지역내 관련기관 등과 연계 협력 강화 - 차시별 평가일지(강사용, 관찰자용),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자료: 서울시(2017), 2017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

강사 자격기준은 아래 표 Ⅲ-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유경험자로 3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등이다.

표 Ⅲ-10 장애인·청소년 성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 ① (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인·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유경험자로 3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 ② 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비장애인·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유경험자로 5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 ③ 3년 이상의 수화통역사
 - ※ 단,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가 1명 이상이고,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인·청소년 성교육 유경험자로 1년 이상 연간 15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준용하여, 제56조의 취업제한대상자는 강사와 사업담당자 등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 2017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서울시는 올해 「2017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인권교육이 주요 추진과제이며, ‘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인권조약 및 협정에 부합한 성인지적 인권교육 지침 마련 및 보급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서울시 및 교육청, 지역사회 전문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성인지적 인권교육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내 성인지적 인권 환경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서울시, 2017a).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표 Ⅲ-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① 서울형 성인지적 인권 가이드북 개발 및 제작, ② 중·고등학교와 마을연계 성인지적 인권 환경 조성, ③ 성인지적 인권 활동가 배치 및 양성, ④ 성인지 교육사업 관련 민간협의체 운영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Ⅱ 표 Ⅲ-11 Ⅱ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수행기관 수행업무

구분	세부내용
중·고등학교-마을 연계 성인지적 인권환경 조성	
①서울형 성인지적 인권 가이드 개발 및 제작·보급	-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성인지적 인권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 국제인권조약 및 협정에 기반을 둔 성인지적 인권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 중·고등학교 및 마을 단위 성인지적 인권 활동 시 운영 지침으로 교육청 및 민간 활동 전문가 등에 배포
②중·고등학교-마을 연계 성 인지적 인권 환경 조성	- 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대상 성인지적 인권 교육 운영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마을 속 성인지적 인권활동 현장 조성 및 활성화 -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인지적 인권 침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성 인지적 인권 논의 분석 -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성인지적 인권 환경 조성(마을 축제, 원탁회의, 포럼 등) 지원 등 - 서울시교육청,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 서울시 4개이상 권역으로 구분, 총 800회 40,000명 이상 교육 실시 - 자율학기제 등 참여 학생의 성별 및 교사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론 개발 - 성인지적 인권교육 등 진행과정 모니터링 후 실행과정 평가관리
③성인지적 인권 활동가 배치 및 양성	- 서울을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 학교와 마을 중심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활동 기획 및 추진 - 성인지적 인권 활동가 양성(100명 이상) 및 활동지원 등- 기존의 인권담론 및 젠더 이슈 등을 공유하고, 집단의 자발적 역동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법론 등 워크숍 형식으로 지원
④성인지 교육사업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 성인지적 인권교육 사업 관련 서울시- 서울시교육청-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인지적 인권활동 사업 등을 사전 검토하고 기획-실행-확정-환류 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소통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등

자료: 서울시(2017), '17년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협치)추진계획.

사업추진체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민간전문가 네트워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역할은 총괄계획수립, 교육교재 개발, 활동가 양성,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반영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대상 학교 및 학생 선정, 교육장소 및 시

간 확보, 교육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동아리 활동 2~3학년생이며, 교육인원은 약 20,000명이다. 교육내용은 Ⅲ 표 Ⅲ-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인지 이해 및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 및 교사교육도 1,000명을 계획하고 있다(서울시, 2017b).

Ⅲ 표 Ⅲ-12 중학생 성인지 이해 및 실천하기 교육구성(안)

프로그램명	교육구성내용
나는야, 인권 입문자	인권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키워드를 통한 인권 정의하기 인권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해하기
차별을 차버려!	다양한 차별(성, 나이, 지위, 인종 등),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힘과 차별 알아보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우리는?
성평등? 뭐야?	성과 젠더란 무엇인가? 인권과 성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단톡방, 포레 문화 등

자료: 서울시(2017),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성평등교육 추진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4년 여성지도력 향상 및 지도자 양성,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IT과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교육사업에 착수하였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분야별 여성리더 양성 및 리더십교육, 지역여성지도자 역량 강화교육 등 여성들의 역량강화교육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교육방향을 일부 전환하고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을 본격화하였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서울시의 여성정책인 ‘여행(女幸)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자치구 여행포럼(女幸)교육을 실행하였다. 이어서 2012년 서울시의 여성안심정책을 기반으로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폭력예방교육이 법제화되면서 아동성폭력예방 및 학대예방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재단의 대표적인 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강좌,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폭력예방교육이다. 양성평등강좌는 2006년부터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2012년까지 운영되었으나 2013년 재단 자체사업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사업명칭이 성평등시민강좌로 변경되었고 사업진행 방식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양성평등강좌는 공공기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운영되었다. 2016년 성평등시민강좌가 폐지되었으나 일반시민 대상 교육은 2016년부터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흡수되어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재단의 대표적인 성평등교육이다. 공무원교육은 2011년까지 성인지감수성 향상과정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 여성행복프로젝트, 젠더파트너십,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나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표 III-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 추진현황

구분	교육사업(단위사업 중심)
2004년	- 여성지도력 향상 및 지도자양성 -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과정 - IT 단기 및 장기핵심과정
2005년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여성지도력 향상 및 지도자 양성 - 차세대 여성 국제리더 양성 - 주민자치 여성위원 워크숍
2006년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분야별 여성리더십 증진교육 - 지역여성지도자 맞춤연수 -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 - 양성평등강좌
2007년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분야별 여성리더십 증진교육 - 지역여성지도자 맞춤연수 -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 - 비영리부문 여성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양성평등강좌

구분	교육사업(단위사업 중심)
2008년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분야별 여성리더십 증진교육 - 지역여성지도자 맞춤연수 -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 - 비영리부문 여성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양성평등강좌
2009년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 젠더리더십 교육 - 지역여성 지도자 맞춤연수 - 자치구 여행포럼 교육 - 주민자치교육 - 양성평등강좌
2010년	- 공무원 성인지교육 - 여성리더십 증진교육 - 지역여성지도자 맞춤연수 - 자치구 여행포럼 교육 - 자치구 주민자치교육 - 양성평등강좌
2011년	-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 여성리더십 증진교육 - 자치구 여행포럼 교육 - 양성평등강좌
2012년	-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 양성평등강좌 - 성인지정책 여성리더십 교육
2013년	-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 양성평등강좌 - 서울시성폭력예방교육(수탁) - 여성폭력예방교육(자체) - 공공분야 여성 리더십 교육
2014년	- 공공분야 성인지정책교육 -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 성평등시민강좌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서울시여성폭력예방교육

구분	교육사업(단위사업 중심)
2015년	-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 성평등시민강좌
2016년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최근 5년간(2012~2016년) 재단에서 추진한 성평등교육사업 중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다. 공무원교육은 자치구와 서울시의 수탁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역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매칭사업으로 수탁과제에 해당된다. 아동성폭력 및 학대예방교육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은 기부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올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재단의 성평등교육은 수탁사업 비중이 높고,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에 편중되어 있다. 수탁과제는 수탁처의 요구에 따라 교육방향과 교육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기획, 프로그램 구성 등에 제약점이 존재한다. 특히, 공무원 교육은 행정안전부⁴⁾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와 서울시의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지표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이 구성되고 있다. 2017년 3월 서울시에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수탁기관(서울시와 자치구) 요구에 의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별도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단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성평등교육에 대한 연도별 종합교육계획 및

4)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발족되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전담 부서가 부재하다. 교육사업은 2~3명의 사업담당자가 교육 이외의 다른 과제들과 병행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전담 교수 인력이 없어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교육 관련 세부과제들이 부서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현재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보육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주류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전문인력 부족 및 전담 부서 부재로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재 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성평등교육 현황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 현황은 최근 5년간 진행된 성평등교육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본다. 분석 대상자료는 성평등교육 관련 단위사업별 착수보고서,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등이다. 또한 내부 TFT에서 재단 교육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재단의 성평등교육은 수탁사업 형태로 진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서의 서울시 성평등교육 현황과 같은 수위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서울시 및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성평등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수탁과제 형태의 교육사업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1)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은 2005년 공무원 직무전문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2007년까지 성인지감수성 향상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 재단이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체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재단의 대표적인 성평등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은 2011년까지 성인지감수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파트너십, 성인지예산 등 다양한 세부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나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분석평가교육이 의무화되자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양성평등추진분

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세부지표를 신설하였다. 측정방법⁵⁾은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공무원 수에 의해 해당지표의 배점이 산출된다(행정자치부, 2017).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 공무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과정, 관리자과정, 영역별(가족/돌봄, 일자리, 도시안전, 복지, 보건) 과정 등 담당자 및 영역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표 Ⅲ-14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추진현황

년도	교육과정	대상	횟수	인원	비고
2005	성인지감수성 향상과정	서울시 자치구	3	304	공무원 직무전문과정 (서울시인사과)
2006	성인지감수성 향상과정	서울시 자치구	7	337	
2007	성인지감수성 향상과정	서울시 자치구	17	738	
2008	성인지감수성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여성행복프로젝트과정	자치구	55	1,845	공무원성인지 정책교육 이수기관 지정
2009	성인지정책형성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성인지감수성향상과정 젠더파트너십과정 여행프로젝트과정	자치구	47	1,550	
2010	양성평등정책과정 지방자치시대 양성평등정책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성인지예산통계과정 성인지력향상과정 남녀파트너십과정	자치구	47	1,981	

5) 2017('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양성평등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산식= (교육이수 5급이상 공무원수×2)+(교육이수 6급이하 공무원 수)/전체공무원수 ×100

년도	교육과정	대상	횟수	인원	비고
2011	성인지감수성과정 남녀파트너십과정 성별영향평가과정 성인지예산과정 일·가족양립과정 여성친화도시정책과정 관리직공무원과정	자치구	55	2,885	서울시수탁 별도실시 292명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심화과정 성인지통계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과정 성인지예·결산 실습과정 성주류화정책 관리자과정	자치구	55	2,122	서울시수탁 별도실시 888명
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습과정 성인지예산 실습과정 성인지정책 액션플랜 수립과정 성인지정책기획 관리자과정	자치구	54	2,097	서울시수탁 별도실시 863명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이해과정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담당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담당자과정 성인지정책관리자과정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핵심이해과정	자치구	47	2,699	서울시수탁 별도실시 1,300명
2015	건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자치구	57	2,774	서울시수탁 별도실시 1,043명
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자과정 가족/돌봄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일자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도시안전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복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보건과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	자치구	52	2,791	서울시수탁 별도실시 616명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2017 3월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⁶⁾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 정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남성 2.40, 여성 2.58에 불과하며, 성인지 의식의 전체 평균은 3.29이다. 근무처별로는 본청 직원들의 성인지 의식은 사업소 보다는 높지만 자치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인지 의식이 낮으며, 연령과 직급,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성인지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7c).

이는 경상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 현황 및 실태 분석(정숙남·허균, 2014)과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양성평등의식 교육 경험 및 태도 조사(김봉화, 2014)에서 연령, 직급,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성인지 의식이 낮았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료적인 조직문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직장 생활이 길수록 성 중립적이고 성평등 의식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청 공무원이 자치구 공무원 보다 성인지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은 성인지정책교육 참여도가 자치구에 비해 저조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⁷⁾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대상 성인지정책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위의 Ⅲ 표 III-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치구는 2005년부터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교육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교육이수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본청은 최근 5년간 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의 연평균 교육이수 인원은 940명에 불과하다.

성인지적 관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보다 평등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과 자질이다.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도구로 활용되는

6) ①조사기간: 2017. 3. 2~ 3. 12. ②조사인원: 6,763명 ③조사내용: 성인지 의식 및 성평등 정책 지지도, 성주류화 관련 용어 인지 정도, 성인지 정책 경험 및 개선방안 ④성인지 의식조사 결과: ①성인지 의식 전체평균 3.29 ② 집단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행정직이 타 직군에 비해, 또한 연령과 직급,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성인지 의식이 높음 ③본청 직원의 성인지 의식은 사업소 보다 높지만 자치구보다 낮은 ④여성정책 관련 부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성인지 의식이 높지만, 성인지교육, 워크숍 참석 등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은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서울시(2017),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추진계획).

7) 자치구 직원에 비해 본청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 정도 역시 낮게 나타남.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가 본청 공무원이 자치구에 비해 교육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자료: 서울시(2017),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추진계획).

중요한 수단으로 성평등 정책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갑숙, 2010).

따라서 효과적인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추진 주체인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위주의 단편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성인지강화교육계획, 성인지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서울시, 2017c).

(2)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womb)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womb)은 청소년들에게 성 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몸과 성(sexuality), 여성 자신을 돌아보고 여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은 서울시의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기부처의 기부 중단에 의해 재단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클래스, 주치의사업, 토크콘서트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아름다움 클래스가 중심축으로 여자중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교육대상이며,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육방식이다. 학교 성교육과의 차이점은 생리통, 생식기 관련 질환, 산부인과 이용 등 여성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피임을 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원인,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젠더 관점에서 일부 다루고 있다. 강사진은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표 Ⅲ-15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구성	주요내용
총45~50분	강의 취지	- 강사 및 아름다 '웜' 소개
	여성의 몸	- 성관계와 임신, 피임(월경주기와 가임기, 다양한 피임법) - 피임을 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원인, 성적자기결정권
	여성 건강지킴기	-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 아는 것이 약! 올바른 생리통 진통제 복용법 - 생식기 관련 질환(질염, 골반염), HPV - 산부인과는 언제 가는 걸까? (산부인과 이용)
	질의 응답	- 학생 고민상담

자료: 조자경(2016), 청소년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최종결과보고서.

아름다움 클래스는 2012년 3,773명, 2013년은 20,518명, 2014년 25,741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회 교육시 최소 250명~ 최대 5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대규모 방송강의, 집체교육에 기인한다. 이러한 교육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학교별로 1~3개 반씩 나누어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했으며, 교육방식 개선에 따라 강사 및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표 Ⅲ-16 청소녀 성건강증진사업 아름다움 추진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름다움 클래스	15회 (3,773명)	39회 (20,518명)	50회 (25,741명)	60회 (4,666명)	74회 (4,745명)
토크콘서트	5회 (7개교, 2,600명)	4회 (6개교, 4,500명)	2회 (2개교, 2,135명)	2회 (2개교, 1,287명)	-
주치의사업 MOU	-	-	1회 (3개교,1개 병원)	2회 (4개교, 2개 병원)	1회 (2개교,1개병원)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3) 양성평등강좌(성평등시민강좌)

양성평등강좌는 2006년 ~ 2012년까지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재단 자체 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2015년까지 운영되었다. 양성평등강좌는 교육대상이 공공기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교육분야는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등이다. 2013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이 전체 교육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별로 자체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단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문제점이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어르신,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대상자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업명칭을 성평등시민강좌로 변경하고 사업 진행 방식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2015년도 성평등시민강좌는 아래 표 Ⅲ-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부모, 어르신 관련 시설 및 복지관,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참여

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강좌구성은 성평등의 이해, 젠더 커뮤니케이션, 성폭력예방교육, 성평등조직문화(성희롱예방교육) 등 총 4개 분야이다. 2014년부터 별도 기획강좌로 열린시민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세대별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가족의 삶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Ⅲ-17 2015 성평등시민강좌 분야 및 주요 내용

분야	강좌명	대상	교육시간	주요내용
성평등의 이해	성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성평등교육	복지관 학부모 교사 지역 청소년 센터 대안학교 등	2	- 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성평등 교육 • 성평등 관점을 통한 성 관련 문제 이해와 그 장점 •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성에 관한 문제 유형별 분석 및 도움 방법 소개
			연속 강좌	- 일상에서 고민하는 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참여식 성평등교육 • 성평등 관점을 통한 자아와 관계 성찰 • 아동성폭력 / 십대의 성 • 성평등이 필요한 일터와 마을
	자존감을 높이는 노인 성(性)평등 교육	어르신 관련 시설 및 복지관 등	2	- 65세 이상 여성과 남성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교육 • 연령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 • 젠더감수성 향상을 통한 노인의 성평등한 관계 형성 훈련 • 성평등한 관계를 통한 상호자존감 향상
젠더 커뮤니케이션	갈등해결을 위한 성평등 의사소통	복지관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등	2	-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성평등 의사소통 기초 교육 • 평등하고 평화로운 언어습관 습득을 통한 갈등해결법 • 가족,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소통방식 훈련 • 평화적 갈등해결법을 통한 가정·지역·사회 갈등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	가까운 관계일수록, 성폭력예방	학부모 복지관 교사/성인	2	- 친밀한 관계에서 더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법 • 애인, 가족, 배우자,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가능성 • 친밀한 관계의 언어 및 신체 성폭력 사례 •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분야	강좌명	대상	교육시간	주요내용
성평등 조직 문화 (성희롱 예방 교육)	신입사원부터 시작하는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민간기업 신입사원 특성화고3	2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신입 사원, 취업 준비자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 성차별적 노동 현실의 이해와 성평등한 일 터 조성을 위한 교육 • 신입사원이 접할 수 있는 성차별적 문화와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는 실천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뉴딜일자 리 참가자 자치구 직능협회 영세사업 장 등	2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공공기관 및 지역 일자리 참가자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평등한 일터 조성 필요성 및 성희롱 예방 을 위한 기본 교육 • 성평등한 일터 문화 및 조직 문화 형성 교육

자료: 이보미(2015), 성평등시민강좌 최종결과보고서.

연도별로 성평등시민강좌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62,013명, 2013년 57,821명으로 1회 교육시 평균 240명~27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2013년까지 성평등강좌의 주요 교육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전체 학년 대상 방송 교육, 강당을 활용한 집체 교육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소규모 강좌로 전환하여 1회 평균 교육생 인원은 50명~60명 수준이다.

표 Ⅲ-18 연도별 성평등시민강좌 참여 인원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찾아가는 시민강좌	258회 (62,013명)	210회 (57,821명)	93회 (4,958명)	154회 (8,801명)
열린강좌	-	-	6강좌	7강좌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4) 폭력예방교육

가.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아동 대상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에서의 성폭

력예방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전문기관과 강사가 한정되어 있어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 안전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의 교육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내 몸의 소중함 및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이다. 교육방법은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역할극, 시청각 교육 등이 활용 가능하다.

표 Ⅲ-19 교육기준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교육내용	- 내 몸의 소중함 - 내 몸의 정확한 명칭 -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교육방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 (제28조 제1항 관련)

현재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과 전문성,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4년부터 보육시설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추진되었다.

2014년은 소규모 어린이집 만 5세 이상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유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교육대상이 유아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성폭력예방 중심 교육이 아동학대예방까지 교육내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사업추진부서도 변경되었다.

그림 Ⅲ-2 교육대상 어린이집 원장 사전 간담회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최종보고서.

2016년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만5세 유아 및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도별 교육인원은 아래 **표 Ⅲ-20**에서 살펴보면 2014년 2,417명, 2015년 1,545명, 2016년 1,865명이다.

표 Ⅲ-20 유아 및 학부모 등 교육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만5세 유아	1,946명	437명	174명
학부모 및 교사	471명	1,108명	1,691명
합계	2,417명	1,545명	1,865명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화재, 재난 실종, 유괴,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장미혜 외(2015)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폭력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예방교육을 누가 진행하는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설명, 긴급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이 달라져 교육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아 및 아동 대상 폭력예방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가 뿐만 아니라 아동교육 및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발달 단계, 연령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최근 공공기관 대상의 폭력예방교육 의무시행 확대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장미혜 외, 20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사업은 전국 18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은 2016년부터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씩 사업예산을 매칭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예방교육은 국비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아래 Ⅱ 표 Ⅲ-21 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성원, 학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종사자 등 매우 다양하다.

Ⅱ 표 Ⅲ-21 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대상	세부내용
민간기업종사자	- 운송업 종사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 건설현장 근로자: 일용근로자, 중장비 기사 등 - 농공단지, 공업단지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 - 기타 일반기업 종사자
지역사회성원	- 지역사회 지도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지역 사무장 등 - 지역안전프로그램 참여자: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원 등 - 지역사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음식숙박업,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 등) - 기타 지역주민모임 등
학부모	-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 장애인 부모 - 기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학부모 모임
이주민	- 결혼 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및 이주노동자 등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등
노인	- 노인대학,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관련시설 이용자 - 노인 전문 요양시설 입소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사회복지 및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

대상	세부내용
청소년 수련 시설 종사자	-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종사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 돌봄노동종사자: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군인	- 군핵심계층(영관급 이상 지휘관)(국방부와 협의된 부대에 한함)
아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고3 예비사회인(수능 이후, 취업 전)
대학(원)생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기타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원봉사자 - 준법교육수강명령대상자, 수형자 - 복지관, 여성회관 등 프로그램 수강자 - 미혼모자쉼터, 노숙인 쉼터 등 시설 입소자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메뉴얼.

폭력예방교육의 기본방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례 및 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폭력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성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지 관점에서 폭력을 인식하고 피해·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관점에서 폭력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인식 및 지역사회 안전 문화 조성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표 Ⅲ-22 폭력예방교육 관련법상 교육목표 및 주요 내용

영역	교육목표 및 내용	관련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메뉴얼.

201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 330회(9,927명), 가정폭력예방교육 58회(1,877명)로 전체 388회를 지원했으며, 11,804명이 참여했다. 교육참여자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예방교육 3,452명, 가정폭력예방교육은 1,265명이 참여해 전체 교육생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 표 Ⅲ-23 ■ 20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현황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민간기업종사자	6	356	2	119
지역사회 성원	24	640	8	285
학부모	97	3,452	39	1,265
이주민	4	69	4	48
장애인	39	410	-	-
노인	5	266	1	21
사회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32	1,316	3	113
군인	30	383		
고3 예비사회인	84	2,800		
기타	9	235	1	26
합 계	330	9,927	58	1,877

자료: 조자경(20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지역기관운영 최종결과보고서.

3. 시사점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이다. 이러한 교육사업들은 여성가족부의 매칭사업과 연계되어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7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협치) 사업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예방교육의 효과가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중심에서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서울시, 2017a). 그러나 본 사업은 올해 첫 시도된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며, 성과축적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은 여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진행방식은 공모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단체(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체적인 성평등교육 방향 및 추진전략 없이 매년 단위사업마다 위탁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연도별 교육목표,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 교육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수탁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탁처의 요구에 따라 교육방향과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있다. 재단 역시 성평등교육에 대한 연도별 종합교육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강의전담 교수 인력이 없으며, 교육연구 인력 부족으로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재개발 등이 어려운 점 등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앞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본격화하였다. 서울시 젠더자문관의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평등, 성인지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교육과 추진과제

1.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2. 성평등교육 관련 교사 연수 현황
3. 학교 성폭력예방 종합근절 대책
4.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교육과 추진과제

최근 남학생을 능가하는 여학생의 성적과 대학진학률이 부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재생산, 교과목과 진로선택에서의 성별분리, 학교 폭력과 성희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정해숙 외, 2013).

아동청소년기는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올바른 성평등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 2017b). 청소년 시기가 자아정체감 획득뿐만 아니라 성별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평등한 가치관 정립은 향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정착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안상수 외, 2012).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 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청소년 성건강 증진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⁸⁾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추진현황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성평등교육내용,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교사들의 성평등교육 및 교사연수과정 현황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종합근절 대책 등을 검토하고 평등스쿨 운영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8)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72.0%가 각급 학교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1.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 추진현황

1)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성평등교육 내용

(1)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과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1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는 「2015개정 교육과정」⁹⁾이 연차적으로 적용된다(교육부, 2015c). 따라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성평등교육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등 사회, 도덕, 윤리, 보건, 체육, 가정·기술 교과에 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성평등을 주제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이 선정되어 있다. 이는 관련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성평등교육이 통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초·중등학교 주요 교과의 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 Ⅱ 표Ⅳ-1과 같다. 초등학교는 3~4학년 사회과에서 양성평등의식과 태도 함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5~6학년은 조선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학교는 사회, 도덕, 기술·가정, 체육, 보건 등 보다 많은 교과 교육과정에 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3). 그러나 초등교육과정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계성 역시 불

9) 2015년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국정: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이밖에도 중학교 사회과는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단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옥일남, 2015b). 사회 교과목에 포함된 저출산·고령화, 체육 교과목에 포함된 올바른 성지식과 성역할 이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 행동 등은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뤄질 수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정해숙 외(2013)는 고등학교 사회 관련 교과는 여성차별 등의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책을 탐색하고 있으며, 성불평등 의미와 불평등 현상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성평등 관련 내용이 여전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다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건교과는 성역할 및 편견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상황, 성폭력, 성매매 예방 등을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이중적 성규범 및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구조 등은 심도 깊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IV-1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성평등교육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용

학년	교과목	교육과정 내용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12)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② 사례를 들어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갖는다.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4)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②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만덕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
중학교	사회	□ 지리영역 (6)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 ③ 지역에 따라 인구문제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 문제점, 대책을 조사할 수 있다. □ 일반사회영역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⑤ 한국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예,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적 변화 등)을 탐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도덕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③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와 실천
	기술·가정	□ 가정생활 (4) 가족의 이해 (가) 양성평등 및 세대간의 조화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학년	교과목	교육과정 내용
	체육	☐ 건강활동 (나) 건강과 체력 ③사춘기의 심리적·신체적 변화, 2차 성징 등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지식과 성역할을 이해한다. ④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예방법과 대처 행동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
	보건 (선택교과)	(나)성과 건강 ②이성교제와 성역할, 임신, 피임 등 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 ①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한다. ⑤고정관념을 탈피한 성역할 재설정의 예를 설명한다. ③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 성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⑦성상품화와 성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①성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의 대처방법과 개선방법을 탐색한다.
고등학교	사회	☐ 공정성과 삶의 질 ☐ 개인과 공동체 - 탐구활동 및 논술 예시 ⑧여성차별 혹은 지역간, 집단간 갈등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밝힌 후 여성 할당제나 지역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4) 가족의 이해 (가)양성평등 및 세대간의 조화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사회·문화	(4)사회계층과 불평등 ④성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생활과 윤리	☐ 생명·성·가족윤리 (다) 성과 사랑의 윤리 ②성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보건 (교양교과)	(나)성과 건강 ②사랑, 성적결정권, 성역할 등 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 ⑦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알아보고,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④성폭력·성인성 질환 예방 등 성적인 위험과 안전 ⑦성폭력, 성매매, 성상품화의 현황을 알고 대처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①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탐색한다.

자료: 정해숙 외(20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2) 교과서에 나타난 성평등교육 내용

교과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도구로 학생들이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을 배우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구성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구정화, 2011; 권순형, 2016; 윤문정·승윤희, 2012).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을 다룬 연구들은 교과서가 성평등을 직접 내용으로 다루는 단위뿐만 아니라 삽화 및 사진 등의 자료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때 성평등교육의 잠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성평등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직업을 소개하는 단위에서 성별 직업 예시를 들 때 성차별적이거나 편견을 담아내지 않는 것, 정치를 언급하는 내용에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주요 인물로 묘사되는 등의 성평등 관점을 고려한 교과서 구성이 잠재적으로 성평등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권순형, 2016; 윤문정·승윤희, 2012).

표 IV-2 교과서 내용의 분석준거

탐색영역	분석준거
양성평등교육 주제나 소재	성차별, 여성 지위와 역할의 변화, 성역할 고정관념, 성불평등 현상, 성 불평등 발생원인,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노력
학습소재 제시방식	사진, 삽화, 그림, 속담, 표 그래프, TV, 자료, 활동
성별분포 현황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와 비중, 희소성, 불균형, 남녀등장 인물의 가시성
성역할의 구현 양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 지위와 역할 변화, 남성이 보통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활동, 여성은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활동을 하는 모습 제공, 양육·가사 책임은 여성에게만, 부양책임은 남성에게만 표현했는지 여부, 여성차별을 막으려고 남성을 차별하는 내용을 표현했는지 여부

자료: 옥일남(2015),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의 구현 양상 탐색.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여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특히 사회과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의 가치와 태도’를 교육내용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평등 가치에 기초하여 여성차별과 성별고정관념 등의 문제를 제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교과서에 언급된다(구정화, 2011; 오경화, 2015).

오경화(2015)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탐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본문 내용에서 여성 인물 비율은 20%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등장인물의 역할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평범한 학생이나 주부,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고 있었다. 둘째, 만화삽화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남성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직업으로, 여성은 가정생활 등 사적인 영역에 등장하였다. 게다가 여성은 경제활동에서 소비자로서 그려졌으며, 나약하고 불쌍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삽화에 주로 등장하는 가족 형태는 부부와 아들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로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옥일남(2015b)은 사회과 교과서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4-2, 중학교 사회 2, 고등학교 사회문화, 법과 정치 과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점정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으로 성 편견 내용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선정된 주제나 소재를 보면 성역할 변화,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사례, 성차별 원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나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에서 재현된 성차별주의 분석도 진행되었다. 김하나(2016)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리 영역부분(1~7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서(3종)의 사진과 삽화, 텍스트 자료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교과서 속 사진과 삽화, 텍스트 속 인물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의 40~43% 수준이며, 등장인물의 역할 비중 역시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진과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은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에 비해 소극적이고 보다 적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셋째, 인물들의 활동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공간 스케일(Scale)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는 활동 특성을 성별로 분류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세계 스케일(Scale)에서 여성은 24%, 남성은 76% 비율로 재현되고 있어 공간 활용 범위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재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과서를 통해 제대로 된 성평등교육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평등 내용을 다루는 단원만 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삽화, 그림 등 다양한 학습 소재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명시적

으로 서술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구정화, 2011).

한편, 도덕과는 덕목의 내면화 및 기본적 가치판단 능력의 신장을 통해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이다(박종모, 2010). 김대용(2017)은 중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평등교육 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 성평등을 우리 모두가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성평등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과서는 부부 관계를 유교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음양론에 입각하여 음은 여성성을, 양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도덕과에서 사용하는 성의 개념은 gender가 아니라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강조하는 sex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이다.

최근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청소년에게 역사 지식을 알려 주는 동시에 역사관과 사회 인식을 심어주는 텍스트이다(권순형, 2016; 정해은, 2016). 권순형(2016)은 2014년과 2015년에 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8종)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여성 관련 서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편은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친족 제도, 혼인, 풍속, 여성의 지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을 파악한다’는 교육부의 2009년 개정 사회교육과정 학습 성취 기준에 따라 타 시대에 비해 여성 관련 서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에는 처가살이 혼인풍속이나 남녀균분상속 등을 예로 들어 가족이나 친족제도 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게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나 생활은 어느 한 시대의 특징적 현상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고려시대 여성에 대한 고찰은 여성이 고려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전후 시대와의 관련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조선시대 여성사 서술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정해은(2016) 역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8종)를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여성’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장 돋보인 서술은 가족분야로, 남녀균분상속, 처가살이, 남귀여가혼, 안동권씨성화보, 율곡선생 남매 분재 등을 활용해 조선 전기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를

보여 주었으며, 여성의 책읽기를 심도 있게 다룬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직조 노동을 담당하고, 천주교 전파에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사회변화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서술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 문화 분야를 제외하면 여성 관련 서술이 매우 빈약한 상황으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는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거나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평등교육과정 개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성평등교육과정 개발 지침은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교과서 심의 등 교육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나침반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김대용, 2017; 김하나, 2016; 정해은, 2016).

2)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해숙 외 2013). 교육부는 2013년 학교 성폭력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 시수를 기존 10시간(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포함)에서 15시간(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으로 늘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12년 10.1시간, 2013년 14.3시간, 2014년 14.6시간의 성교육 수업을 실시했으며 비교적 목표 시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자, 2015).

표 IV-3 각급 학교별 성교육 실시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10.7시간	14.9시간	15.0시간
중학교	10.5시간	14.4시간	15.0시간
고등학교	9.2시간	13.6시간	13.7시간
계	10.1시간	14.3시간	14.6시간

자료: 박혜자 보도자료(2015. 10. 8.)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중심으로 학생 대상 성교육 추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성교육은 법령 및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학년별로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되 성폭력예방교육을 3시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운영방법은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다. 셋째, 학교 성교육은 성교육 표준안 체계에 따라 교육하여 학생이 자신의 성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성 행동은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학생 개인에 따라서는 책임 있는 성 행동, 나아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방법 등에 대해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표 IV-4 | 성교육 표준안의 성취목표

학교 급별	성취목표			추구하는 지향점
	인지적 목표	기능적 목표	정의적 목표	
초등학교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성 건강에 필요한 요소와 기능을 습득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성 건강의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육성
중학교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성 건강에 필요한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습득	생명존중과 성정체성 등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육성
고등학교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성 건강에 필요한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과 기능 습득	생명존중과 성정체성 등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책임 있는 성행동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육성

자료: 2017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계획(서울시교육청, 2017).

한편, 초·중·고등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에 해당된다.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역시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폭력예방교육 중 성매매예방교육은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되었다. 가정폭력예방교육은 2006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폭력예방교육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되었다(여성가족부, 2017b).

표 IV-5 폭력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구분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도입	시기	1999년	2004년	2010년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실적점검		2008년	2015년	2015년	2015년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재구성.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16,959개)을 대상으로 2015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각급 학교가 12,211개로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7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급 학교(12,211개) 중 초·중·고등학교(11,540개)가 94.5%로 폭력예방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대상 기관

(단위: 개소)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소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대학
16,959	1,598	1,518	1,632	12,211	5,963	3,204	2,373	204	467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8. 19.)

각급 학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14년 99.7%로 국가기관(99.4%) 및 지방자치단체(95.9%) 참여율보다 높다. 2015년은 99.2%로 국가기관(99.6%)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율이 높게 나타난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학은 2014년 30.3%, 2015년 33.4%로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는 95.1~98.4% 수준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표 IV-7 Ⅱ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구분		2014년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총계	99.2%	99.0%
	국가기관	99.4%	99.6%
	지방자치단체	95.9%	97.3%
	공직유관단체	98.6%	98.0%
	각급학교	99.7%	99.2%
각급 학교 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초등	97.7%	95.1%
	중등	98.4%	97.7%
	고등	97.5%	95.1%
	대학	30.3%	33.4%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8. 19.) 재구성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자료를 아래 Ⅱ 표 IV-8 Ⅱ 에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성폭력예방교육 방법은 전문가(43.3%), 시청각(23.5%), 내부직원(23.1%), 사이버(7.9%), 단순훈시 (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43.3%로 가장 많았으나 내부직원 및 단순 훈시 25.3%, 시청각 및 사이버 교육도 31.4%를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예방교육 전체 실시 횟수 중 56.7%가 비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4).

하지만 전문가(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전문성 및 효과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대규모 강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회성 교육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계성 부족 및 일방적인 전달 방식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교육생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하혜숙, 2010).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교사 혹은 체육교사가 성교육 위주의 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저해시키고 있다(이수연 외, 2014).

표 IV-8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방법 분석결과

구분	교육 실시횟수	교육방법				
		전문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단순훈시
초등학교	10,835회	4,406회	2,504회	870회	2,869회	186회
		40.7%	23.1%	8.0%	26.5%	1.7%
중학교	6,578회	3,072회	1,582회	483회	1,297회	144회
		46.7%	24.0%	7.4%	19.7%	2.2%
고등학교	4,676회	2,095회	1,104회	397회	930회	150회
		44.8%	23.6%	8.5%	19.9%	3.2%
총계	22,089회	9,573회	5,190회	1,750회	5,096회	480회
		43.3%	23.5%	7.9%	23.1%	2.2%

자료: 여성가족부(2014),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재구성.

둘째,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단위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는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의무연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보건교사는 전체 67.3%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8.8%, 중학교 67.0%, 고등학교 62.6% 순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가장 높은 미이수율을 보이고 있다(박혜자, 2015).

표 IV-9 2015년도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이수 현황

구분	성교육담당교사	지난 3년간 성교육 직무연수 시간		
		30시간 미만	3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초등학교	10,784명	7,418명(68.8%)	2,147명(19.9%)	1,219명(11.3%)
중학교	4,774명	3,197명(67.0%)	1,051명(22.0%)	526명(11.0%)
고등학교	3,205명	2,006명(62.6%)	804명(25.1%)	395명(12.3%)
계	18,763명	12,621명(67.3%)	4,002명(21.3%)	2,140명(11.4%)

자료: 박혜자 보도자료(2015. 10. 8.)

셋째,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현재 성교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 성매매 등 사회문제는 사실상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그러나 실제 성교육은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매뉴얼화된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제 현상 이면에 있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별화된 사회구조, 왜곡된 성문화, 권력 등과 같은 근본적인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탐색보다는 예방 대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2. 성평등교육 관련 교사 연수 현황

1) 교사의 성평등교육 현황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에 “여학생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의무적 성인지 훈련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이 아직까지 권위주의 문화 및 가부장적 성인식이 잔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교사들의 성평등교육 연수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상수 외(2012)가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성평등교육 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재직시 성평등교육 연수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는 전체적으로 55.9%이다. 학교급별로 비교했을 때 아래 ■표 IV-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62.8%, 중학교 52.9%, 고등학교 48.8% 순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연수경험이 가장 낮았다.

■표 IV-10■ 교사 성평등교육 연수 실태

구분	학교급별	남교사	여교사	전체
연수경험 없음	초등학교	61.7%	63.1%	62.8%
	중학교	51.5%	53.8%	52.9%
	고등학교	46.3%	52.1%	48.8%
	전체	51.9%	58.3%	55.9%
1~2회	초등학교	27.2%	26.4%	26.6%
	중학교	25.2%	30.7%	28.7%
	고등학교	41.4%	29.3%	36.1%
	전체	33.3%	28.1%	30.0%
3회 이상	초등학교	11.1%	10.5%	10.7%
	중학교	23.3%	15.5%	18.4%
	고등학교	12.3%	18.6%	15.1%
	전체	14.8%	13.6%	14.0%

자료: 안상수 외(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또한 대학 재학 당시 성평등 관련 과목 수강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17.2%에 불과

하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교사가 17.7%, 남교사는 16.2%로 여교사가 높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19.3%, 초등학교 17.4%, 중학교 14.3%로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평등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교육이 상당 수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현직 교사들의 성평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유경, 2015; 안상수 외, 2012).

【표 IV-11】 교사가 대학 재학 당시 성평등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구분	학교급별	남교사	여교사	전체
수강 경험 유	초등학교	19.3%	16.8%	17.4%
	중학교	8.4%	17.7%	14.3%
	고등학교	18.7%	20.1%	19.3%
	전체	16.2%	17.7%	17.2%
수강 경험 무	초등학교	80.7%	83.2%	82.6%
	중학교	91.6%	82.3%	85.7%
	고등학교	81.3%	79.9%	80.7%
	전체	83.8%	82.3%	82.8%

자료: 안상수 외(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반면, 교사들은 성평등교육 연수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평등교육 관련 연수 의사가 없는 교사들의 연수 미희망 사유를 아래 【표 IV-12】에서 살펴보면, ‘성평등교육 연수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교사 42.0%, 여교사 4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2).

【표 IV-12】 성평등교육 연수 미희망 이유

구분	남교사	여교사	전체
①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12.5%	7.4%	9.2%
②다른 중요한 연수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22.1%	25.1%	24.0%
③연수를 받아도 학교에서 활용할 기회가 적어서	12.7%	7.2%	9.1%
④성평등교육 연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42.0%	49.0%	46.5%
⑤여러 번 이수한 결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7.4%	8.7%	8.2%
⑥기타	3.2%	2.7%	2.9%

자료: 안상수 외(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2) 성평등교육 교사연수과정 현황

(1)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올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총 1,685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교육인원은 총 121,382명이다.

표 IV-13 2017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교육훈련 개요

연수대상		교육과정(개)	교육인원(명)
교원	유치원	29	4,240
	초등	452	26,490
	중등	435	25,962
	유·초·중등	769	64,690
	계	916	56,69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783	51,347
학부모	학부모교육	4	1,600
총계		2,468	172,729

자료: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홈페이지, 2017 연수운영계획.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2017 연수운영계획』을 살펴본 결과, 전체 교육과정 중 초·중등 교원대상 성평등교육은 개설되지 않았으며, 교육행정 직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연수 1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정해숙 외(2013)가 2013년도에 전국 16개 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 교사연수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연수원(광주, 제주)에서 총 3개 과정만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16개 교육연수원에서 성평등교육 관련 과정이 179개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성평등교육 연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IV-14 2017 교육행정연수부 원격 교육훈련 운영계획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연수시간	교육운영 시기	과정수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지원 연수 운영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과 성교육-	100	15	4월	1

자료: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홈페이지, 2017 연수운영계획.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2년 학교 성인권교육 교원 연수과정으로 ‘성인지인권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까지 본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6년부터는 교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가정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현장 적용력을 갖춘 전문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직 교원 및 교육 전문직이 교육대상이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c).

【 표 IV-15 】 2017년 교원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과정	- 전문강사 운영체계 안내 - 성폭력예방! 성인지 감수성 훈련 - 페미니즘과 젠더를 읽다 - 섹슈얼리티, 그 중심에서 - 청소년 성문화, 그 실태를 보다 - 성폭력의 특성과 방향 - 성폭력 예방정책, 변화를 찾다 -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를 알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특성과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 -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현황 - 이슈토론 및 모둠별 Workshop	5일 30h	강의 토의
전문과정	-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태 - 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 교육설계와 강의안 작성법 - 강의안 구성과 실습 - 강의력 코칭	3일 15h	강의 실습
강의 실전과정	- 프로파일링, 성폭력 가해자 분석 - 전문강사의 역할과 윤리 - 미디어 속 성폭력 바로보기 - 모니터링을 통해 본 성폭력예방교육 현장 - 강의현장 대응 전략 - 강의시연 및 평가	3일 15h	강의 토의 실습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안내서.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 보건교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 담당자가 학생부장이나 교무부장인 경우 학생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이 적용된다. 이는 ‘특정 직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가정폭력예방교육 담당자에 의한 학생교육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당 지침은 설명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폭력예방교육은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교육으로 관련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교사, 가정폭력예방교육 담당자인 학생부장이나 가정교사, 교무부장 등을 전문강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교사가 성폭력예방 및 가정폭력예방 관련 전문교육 이수여부 또는 전문강사 강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폭력예방교육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의 성평등교육 관련 연수경험은 전체적으로 55.9% 수준에 그치고 있다(안상수 외, 2012).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의무연수시간(30시간)을 채우지 못한 성교육(보건)교사가 전체 67.3%로 나타나고 있다(박혜자, 2015).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성평등교육 연수 경험이 적고, 해당 교육 관련 의무연수시간 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표 IV-16 2017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관장 교육 이수	5점	10점
고위직 교육 참여율	3점	10점
초·중·고 고위직	(신설)	교감 및 부장교사를 고위직으로 분류하고 교육참여율 관리
교육참여율 및 교육방법 총점 조정	교육참여율 최대 35점	교육참여율 최대 50점
	교육방법 10~40점	교육방법 5~20점
다양한 교육방법 인정	(신설)	토론 및 세미나, 인형극 관람 등을 교육으로 인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관 자체 전문인력 활용	<보건교사의 예방교육> - 학생 대상: 전문강사 교육배점으로 인정(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보건교사의 예방교육> - 학생 대상: 개정전과 동일 - 교직원 대상: 일반강사교육배점으로 인정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가정과목 교사 및 생활부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대상: 전문강사 교육배점으로 인정 - 교직원 대상: 일반강사교육배점으로 인정
	(신설)	대학 양성평등 관련 기관(센터)장 교육: 전문강사교육배점으로 인정
토론, 세미나 관련 자료 제출	(신설)	토론, 세미나 등에 활용한 기관 내 사례 자료 또는 토론, 세미나에 대한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가점 8점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신설)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기관 내부 규정, 지침 등 제출 시 가점 10점
성희롱방지조치 이행 강화	예방교육 배점에 포함	별도 실적 제출 및 점검을 통해 법률 의무사항 미이행 시 부진기관으로 분류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③ 예방지침 제정)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나. 원격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0년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아래 ■ 표 IV-17 ■ 과 같이 총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개 과정은 2학점 과정(30시간)이고 나머지 4개 과정은 1학점(15시간)이다.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양성평등과 폭력예방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2개 과정이며, 폭력예방교육은 6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은 양성평등, 젠더감수성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이 적고 주로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배유경, 2015; 정해숙 외, 20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원격교육은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다른 학습자, 교수자 등과 상호작용하며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면대면 학습과는 달리 학습 진행상황, 교수자와 상호작용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김자미 외, 2010).

【 표 IV-17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 직무교육과정 현황

교육과목	학점	학습시간	교육내용
폭력예방 상담지도	1	15	- 폭력예방과 성인권 - 폭력이해하기 - 폭력 사안처리 및 상담지도 - 폭력피해의 치유
이미 시작된 변화, 성매매 예방	1	15	- 성매매 예방의 필요성 - 청소년 성매매의 이해 -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중등교육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1	15	- 청소년 성폭력 실태 - 인터넷과 음란물 - 성폭력예방교육 지침 - 성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의 역할 - 성폭력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및 가해자 지도 방향
두드림, 양성평등	1	15	- 양성평등의 필요성 - 젠더개념 바로 보기 - 젠더관점으로 섹슈얼리티 이해하기 -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 양성평등에 관한 법과 정책
양성평등 모두를 위한 것	2	30	-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역사 속 양성평등 - 젠더와 사회구조 - 가족의 탄생 - 미디어 속 외모지상주의 - 청소년 지금은 연애 중 - 교사들은 양성평등한가?(생활지도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2	30	- 성희롱고충 사안처리 업무개요 - 성희롱 관련 법제 - 성희롱고충 사안처리 단계 - 착안사항 및 개입전략 - 성희롱 고충 사안처리의 실제 - 기관 및 관리자의 역할
우리의 관심으로 지키는 가정폭력예방교육	2	30	- 폭력점검하기 - 가정폭력 바로알기 - 가정폭력 대응하기 - 가정폭력 지원하기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2	30	- 성인권교육의 시작 - 성인권이란? - 관계와 소통 - 통합폭력예방(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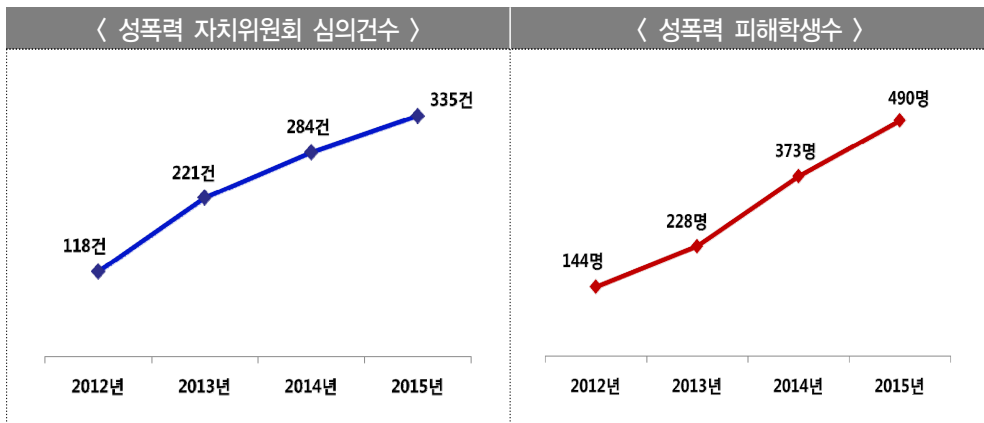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s://egenteacher.kigepe.or.kr>)

3. 학교 성폭력예방 근절 종합대책

1) 학생 및 교직원 성폭력 발생 현황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¹⁰⁾은 지속적인 근절노력으로 감소 추세¹¹⁾에 있으나 성 사안 관련 학교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피해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7a).

■ 그림 IV-1 ■ 성폭력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성폭력 피해학생수 현황



자료: 서울시교육청(2017),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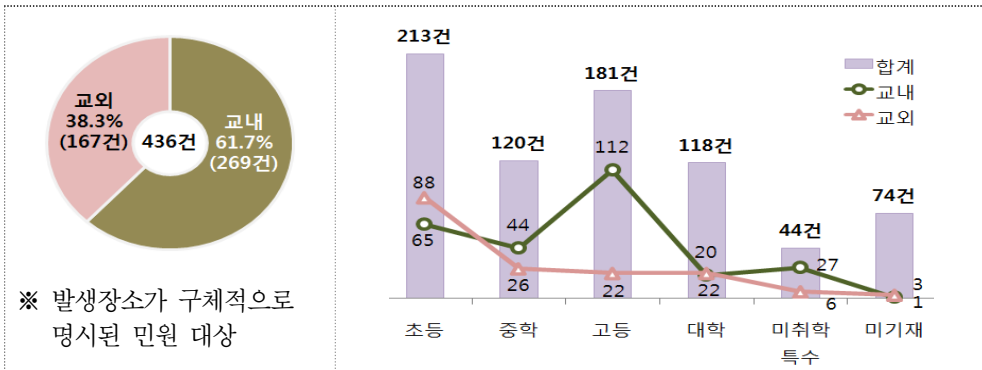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750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초등학교(213건, 28.4%)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181건, 24.1%), 중학교(120건, 16.0%), 대학교(118건, 15.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폭력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이다.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다. 반면, 가해자

10) 학교 성폭력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2014년 1차 1.9%→2015년 1차 1.5%,→ 2016년 1차 1.4%, → 2016년 2차 1.2%

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이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을 보면,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이 43건(5.7%)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7).

【그림 IV-2】 초·중·고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7. 2. 8.)

교직원의 학교 성범죄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학교 성폭력 긴급 실태조사결과를¹²⁾ 보면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학생) 중 0.6%(60명)가 ‘예’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3명(0.4%)은 피해사례를 문장으로 기술하여 일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한 것을 드러냈다.

이처럼 최근 초·중·고등학생의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사건 또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대부분 언어적 성희롱 및 가벼운 신체 접촉을 성폭력 범죄가 아닌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서울시교육청, 2017a).

12)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S여중 사건 등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 위해 서울 시내 중학교 20개교 재학생 10,636명을 대상으로 2016.12.21.~12.30.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여부, 학교 내 성폭력 상담창구 인지 여부, 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 피해 및 사례 등이다.

표 IV-18 서울시 소재 학교 교직원 성범죄 사건 발생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시 교육청	7건	19건	36건

자료: 서울시교육청(2017), 학교 성폭력 긴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 학교 성폭력예방 근절 종합대책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S여중 사건¹³⁾ 등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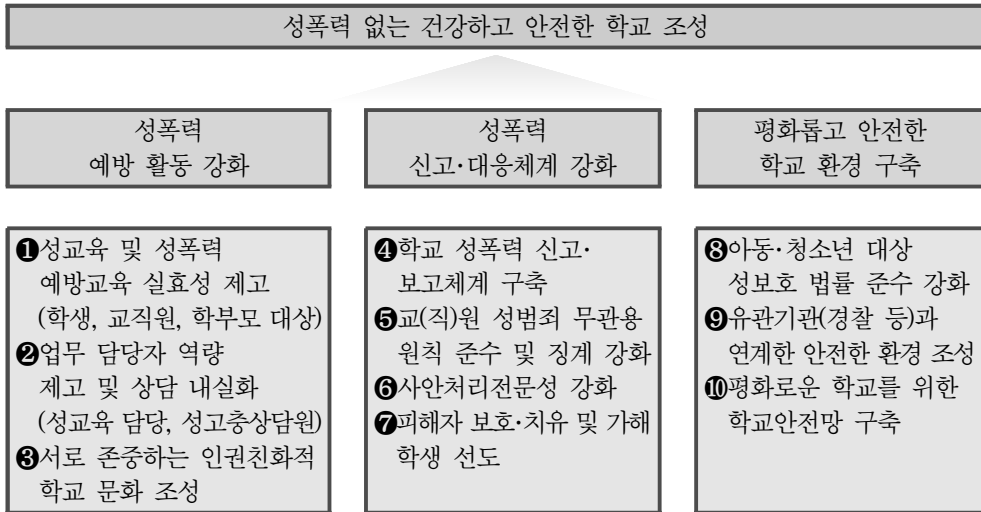
첫째, 학교 성폭력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향으로 ① 학교급별·대상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② 성폭력 신고·상담 창구 활성화 및 성폭력 사안처리 역량강화 필요, ③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학교 안 전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아래 그림 IV-3과 같이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성폭력예방활동 강화, 성폭력 신고·대응체계 강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환경구축 등 3개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10개 추진과제 중 ‘성폭력예방 활동 강화’ 전략으로 ①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② 업무담당자 역량제고 및 상담 내실화 ③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등 3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학생, 교직원, 성교육담당 교사 등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역량강화교육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13) 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강남 S여중 전 현직 교사 5명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2월 SNS에 S여중여고 문제 공론화라는 계정이 만들어지고 재학생, 졸업생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공론화되었다(2017. 4. 6.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31959&plink=ORI&cooper=NAVER#openPrintPopup

Ⅱ 그림 IV-3 Ⅲ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종합대책 정책추진 방향



자료: 서울시교육청(2017),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종합대책.

‘성폭력예방 활동 강화’ 추진과제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추진과제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년별 15차시 이상(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성교육 의무 실시와 전 교직원에게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을 연1회, 각 1시간씩(총 3시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업무담당자 역량제고 및 상담 내실화’로 단위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매 3년 마다 직무연수 30시간 이수를 통해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대상 성교육은 2013년부터 15시간 이상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수업실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또한 본 지침에 의해 보건교사의 단계적 확대 배치 및 보건교사 직무연수 이수도 연 30시간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다. 한편,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이 2003년부터, 성매매예방교육 2004년, 성폭력예방교육은 2010년부터 개별법에서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표 IV-19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중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 추진과제

구분		세부 추진내용
과제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1-1 학생대상	- (올바른 인식제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 (이해·활동 중심 성교육 활성화)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의 내실화 - 초·중·고 대상 학년별 15차시 이상(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성교육 의무 실시
과제 2 업무담당자 역량제고 및 상담 내실화	1-2 교(직)원 대상	- (폭력예방교육 실시) 학교 관리자를 포함하여 전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연1회, 각 1시간씩(총3시간) 의무이수 - ‘사소한 말장난, 언어유희, 신체 접촉’도 학생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성인식 및 가치관 함양 - 성비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징계사례, 판례 등이 포함된 비위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
	성교육 담당교사, 성고충 상담원	-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단위학교의 성교육 담당 교사 지정 및 매 3년마다 직무연수(30시간) 이수를 통한 전문성 확보 - (학교 성고충 상담원 역량강화) 학교 내 성고충 상담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학교 성폭력예방 및 상담활동 내실화 도모

자료: 서울시교육청(2017),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종합대책.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시간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초·중·고등학교의 성평등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는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거나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의

의무시간을 준수하려다 보니 주로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평등한 젠더 관계문제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배유경, 2015; 정해숙 외, 2013).

폭력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빚어지는 산물로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회문제는 성불평등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왜곡된 성규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용적이고 성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행적이고 성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화숙, 2016).

따라서 평등스쿨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대상 성평등교육은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젠더감수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나 도덕, 윤리 과목과 같은 정규교과목에도 성역할과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교육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은 여전히 염려스러운 수준이다. 교사의 성평등교육 관련 연수경험은 55.9%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평등교육이 상당 수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현직 교사들의 성평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유경, 2016; 안상수 외, 2012; 정해숙 외, 2013). 그러나 학교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건교사 혹은 체육교사가 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저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이수연 외, 2014).

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 대상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평등스쿨에서 교사 대상 연수과정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대상 성평등교육은 교과교육이나 교수방법,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과 같이 교사들의 직급 및 담당업무에 따라 교육수요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정해숙 외, 2013).

V

평등스쿨 운영방안

1. 평등스쿨 개요
2. 평등스쿨 운영(안)
3.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평등스쿨 운영방안

1. 평등스쿨 개요

성평등교육은 다양한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주체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 넓게 수행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무원 대상 성인지 정책교육과 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 개별 단위 학교 역시 성평등교육의 이름으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여성단체와 사회교육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배유경, 2015).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혐오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 또한 만연해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이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성차별 및 여성 혐오 등의 공론화로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 인식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기존 ‘기반 조성’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 영역에서 성평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2017b). 그러나 서울시의 성평등교육은 주로 민간기관(단체)에 의해 위탁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와 중장기계획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학교 성폭력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축소된 성평등교육이 성차별과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교육이 요구되고 있다(김고연주, 2016; 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젠더교육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젠더체계를 바르게 바라보는 눈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역할과 권력관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평등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최문선,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성평등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존 성평등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등스쿨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등스쿨(가칭)은 다양한 성평등 이슈에 대한 강의와 모둠활동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젠더감수성 향상과 실천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평등스쿨의 차별화 전략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행하는 평등스쿨 운영과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조사, 강사양성 등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이 결합하는 형태로 교육현장 실행력 및 교육의 품질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성평등교육, 평등스쿨의 주요 교육대상과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은 공공부문과 일반시민 등 전 국민이 교육대상에 해당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등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서울시의 대표적인 성평등교육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이다. 주요 교육대상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동아리 활동 2~3학년이며, 인권교육 활동가(약 50명)도 일부 양성하고 있다.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의 주요 특징은 교육내용으로 ‘성인지 이해 및 실천하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인지적 인권 지침 마련 및 보급, 지역사회 내 성인지적 인권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서울시, 2017a).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외부 민간기관(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셋째, 평등스쿨의 주요 교육대상은 서울시의 성평등교육 사각지대와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이다. 성평등교육 사각지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에서 제외된 대상으로 주로 공교육 부분의 사각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젠더감수성 향상 및 실천력 강화를 교육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추진방법을 살펴보면, 성평등교육 사각지대는 법정 의무교육시간과 결합, 통합교육을 실행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대책 활동가는 해당 직무 교육과 결합하여 성평등 관련 현장 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표 V-1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성평등교육, 평등스쿨 사업 비교

구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서울시 (성인지적 인권환경구축사업)	서울시성평등 활동지원센터 (성평등, 성인지교육)	평등스쿨	
				운영	인프라 구축지원
주요 교육 대상	- 공공부문 - 일반시민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동아리 활동 2~3학년	- 시민사회활동가	- 서울시 성평등 교육 사각지대 -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활 동가	
주요 특징	- 공공부문: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교육 - 일반시민: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교육	- 성인지 이해 및 실천하기 교육 - 성인지적 인권 가이드북 개발 및 제작 - 성인지적 인권 활동가 양성 - 성인지 교육사업 민간 협의체 운영	- 성평등, 성인지 교육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 그램 운영 - 2017. 9. 5.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 현재 설립 초기 단계로 교육사 업 비구체화	- 젠더감수성 강 화 및 실천 교육 -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학교 법정의무교육 시간(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교육 등)과 연계 하여 통합교육 -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활 동가: 해당 직 무교육과 연계	- 성평등교 육프로그 램 및 컨텐 츠 개발 - 교육연구 및 조사 - 강사양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평등스쿨 설치 및 운영’을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 사업계획 당시 ‘평등스쿨 설치 및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의 직접 실행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는 서울시의 성평등교육 현황 및 학교 현장의 성평등교육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교육대상 및 교육방향, 예산, 인력확보 방안 등 성평등교육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지난 9월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며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개소되는 등의 환경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처럼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일부가 성평등, 성인지 교육으로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과 중복되고 있다. 현재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설립 초기단계로 교육 관련 세부 추진과제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성평등교육 관련해서 향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서울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재단이 직접교육을 계획한 ‘평등스쿨 설치 및 운영’은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었다. 즉, 재단의 주요 기능인 여성정책 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교육을 실행하기보다는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중심으로 평등스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역할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등스쿨 운영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평등스쿨 운영 방안을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접교육을 실행하는 평등스쿨 운영(안)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행하는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2. 평등스쿨 운영(안)

평등스쿨 운영(안)은 교육현장에서 성평등교육을 직접 실행할 경우 전략적 교육대상, 교육방향, 교육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전략적 교육대상

(1)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문화 개선 및 성차별 인식 해소를 위해 학교, 일터,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의 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세부 교육대상은 Ⅱ 표 V-2 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 동아리 활동 중학교 2~3학년, 중학교 학부모 및 교사 등이며, 학교에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 활동가도 양성한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을 중심으로 학교 성인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과 일반시민 대상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womb),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 어린이집의 유아·보육 교직원·학부모 교육, 대학생 데이트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Ⅱ 표 V-2 Ⅱ 서울시 성평등교육 주요 대상

구분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아		- 유아: 아동 성폭력예방 및 학대예방교육 (어린이집 일부)
초등학생	- 초등학교 4~6학년: 학교 성인권교육 - 특수학교,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중고등학생	- 중학교 1학년: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 - 동아리 활동 중학교 2, 3학년: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성인지적 인권 환경 구축사업)	- 여자중학생 및 고등학생: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아름다움(womb)
교사 및 학부모	-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성인지적 인권환경구축 사업)	-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아동 성폭력 및 학대예방교육

구분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학생		- 대학생:데이트 폭력예방교육(서울시 수탁과제)
공무원	-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교육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성별영향 분석 평가교육(서울시 및 자치구 수탁과제)
일반시민		- 일반시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수탁과제)
활동가	- 현장활동가: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성인지적 인권환경구축사업)	

이어서 성평등교육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아래 Ⅱ 표 V-3Ⅱ와 같다. 성평등교육 사각지대는 중요한 교육대상이나 서울시(여성정책담당부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교육 주요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들이다.

Ⅱ 표 V-3Ⅱ 서울시 성평등교육 사각지대

구분	세부대상
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1~3학년
중고등학생	중학교 2학년~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교사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성평등교육 사각지대는 주로 공교육 부분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초등학생(1~3학년)과 중학생(2~3학년), 고등학생(1~3학년) 및 교사(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다.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2014년부터 재단은 소규모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만 5세 유아,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아동 성폭력 및 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가 주요 교육대상이다. 최근 폭력예방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기부터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현혜 외, 2013; 장미혜 외, 2014; 장미혜 외, 2015). 그러나 장미혜 외(2015)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폭력예방교육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화재, 재난, 실종, 유괴, 교통 안전 등 다양

한 안전교육의 일부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강사가 진행하는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설명,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이 달라져 교육대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유아의 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유아기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4-5세경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역할을 습득하고 다른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며, 만 5세경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이 20대와 거의 동일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남기원 외, 2016; 장영철 외, 201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평등교육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1~3학년은 서울시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분석결과, 초등학교가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성폭력 사안 관련 학교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자, 2015). 이처럼 최근 학교 성폭력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우선적으로 성평등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다.

세번째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 역시 서울시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올해 서울시는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교육대상은 중학교 1학년, 동아리 활동 중학교 2~3학년이나 동아리 활동 학생은 일부 그룹에 한정되어 있어 성평등교육 사각지대에 포함시켰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에 치우쳐 있어 성평등 이슈가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성평등 내용이 지엽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과목 편성으로 성평등교육은 창의재량 학습시간에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학년별 15차시 이상(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 시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2017a; 이수연 외, 2014).

청소년들의 성역할 인식이 과거의 전통적 사고로부터 진전은 되었으나 성별 격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양성이 평등해야한다’는 당위에는 93.9%가 동의하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64.3%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 의사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43.4%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은 28.3%만이 이를 찬성해 남자 청소년과 상당한 성별 격차(15.1%p)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 격차 11.6%p보다 오히려 3.5%p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평등 의식 개선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수연 외, 2016; 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네 번째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서울시와 재단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 대상 성평등교육 연수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성평등 연수과정은 거의 전멸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격과정이 교원 연수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연수과정은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2개 과정에 불과하다. 교육운영 방식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발표한 『학교 성폭력 긴급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은 매우 높으나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 정도와 변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인식 개선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어 교사 대상 성평등 연수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학교보안관 및 지하철보안관 등이다.

표 V-4 서울시 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

구분	세부대상
여성안심정책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학교 안전	- 학교보안관
지하철 안전	- 지하철보안관

서울시여성안심정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의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지역주민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중 사람안전망에 해당된다(조영미 외, 2015).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안심귀가 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을 담당하고 있다.

표 V-5 안심귀가스카우트 최근 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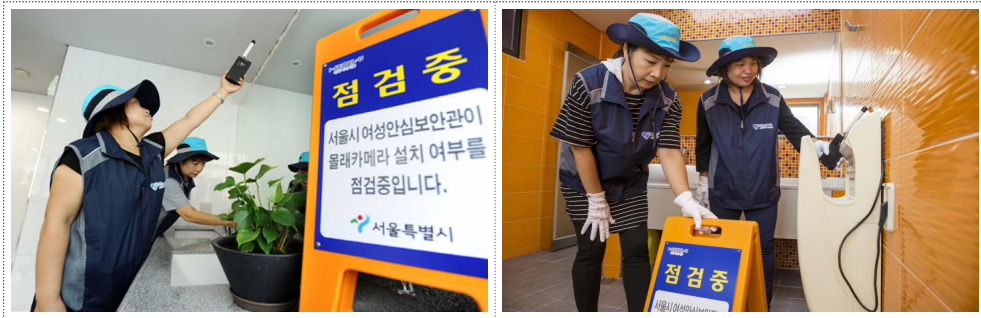
구분	최근 3년간 추진실적
2014년도	- 안심귀가스카우트 500명 - 안심귀가지원 102,139건, 취약지역 순찰 103,830건
2015년도	- 안심귀가스카우트 420명 - 안심귀가지원 232,290건, 취약지순찰 115,941건
2016년도	- 안심귀가스카우트 420명 - 안심귀가지원 175,365건, 취약지순찰 93,589건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2017. 8. 11. 검색)

둘째로,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대책 중 하나로 ‘몰카 범죄를 여성 스스로 적발·차단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여성 주도로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6a).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여성안심보안관은 몰카 점검뿐만 아니라 몰카에 대한 경각심과 스마트폰,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¹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취지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6b).

14)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그림 V-1 Ⅱ 여성안심보안관 활동현황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6), 서울시, 지자체 최초 ‘여성안심보안관....몰카 꼼짜마’

셋째로,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열차·역사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비롯해 물품판매, 구걸, 광고물 배포 등 각종 범죄와 무질서 행위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경찰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월~2014년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지하철 내 범죄 신고(총 6,759건)는 성범죄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보안관은 2011년 1월~2014년 8월까지 성범죄 370건을 적발한 바 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4).

서울시는 2011년 9월 지하철보안관 75명을 시작으로 매년 50명을 추가 배치해 2018년 3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서울시, 2014). 올해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신규 채용된 지하철보안관은 58명이며, 이 중 여성이 20명(약34%)이다. 신규 채용된 여성 보안관은 성범죄 피해자 면담 지원, 심야 시간대 여성취객 응대, 여성 응급환자 발생시 밀착케어에 투입된다(서울메트로, 2017).

넷째로,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소재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학교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1년 서울시 소재 193개 초등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로 학부모 및 학생 불안감 상존, 학교 운동장 개방에 의한 외부인 출입관리 등 학교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도입되었다¹⁵⁾. 현재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 1,188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학교 내·외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 및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

15) 서울시의 학교 보안관 선생님! 이제 학교 가는 길이 무섭지 않아요 관련 웹페이지 참조
http://gov.seoul.go.kr/archives/59251?tr_code=sweb

및 폭력 예방활동, 학교 내 취약지역 순찰, 학생 등하교 지도 등이다.¹⁶⁾

학교보안관 대상 직무교육은 아래 Ⅱ 표 V-6 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CS 교육, 소통, 뇌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성폭력에 방 관련 활동 및 역할 등은 직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Ⅱ 표 V-6 Ⅰ 학교보안관 최근 3년간 교육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실적	- 소속업체 자체교육 - 11개 초등학교 폭력에 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문성 및 책임감 강화를 위한 시 주관 직무 교육 실시(CS교육)	- 고객만족 특강, 학교조직의 이해 및 학교보안관의 역할 - 학교 구성원 간 소통방법 키우기 - 두뇌건강 증진을 위한 뇌교육 -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wp-content/plugins/seoul-scrap> 2017. 8. 31.검색)

2) 교육방향

성평등교육은 새로운 젠더관계와 젠더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배유경, 2015).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젠더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성평등교육은 단순히 ‘기회의 균등’ 차원에 머물러 양적인 기회균등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근본적인 고찰은 배제한 채, ‘양성성’이라는 개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최문선, 2011).

성평등교육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감지해 낼 줄 아는 젠더감수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배유경, 2015; 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최문선, 2011). 즉,

16) 서울시의 학교 보안관 운영 내실화 관련 웹페이지 참조 http://gov.seoul.go.kr/archives/99840?tr_code=sweb

젠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젠더교육은 성평등교육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젠더교육의 방향은 첫째, 젠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젠더감수성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를 말한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성별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우리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조혜련, 2017; 최문선, 2011).

둘째,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를 고려한 성평등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젠더감수성 증진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쪽에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실천적인 영역을 강조해야 한다(최문선, 2011).

젠더감수성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폭력을 감소시키는 조절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이화숙, 2016). 젠더교육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젠더체계를 바르게 바라보는 눈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역할과 권력관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성평등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최문선, 2011).

3) 교육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실제 교육현장에서 평등스쿨을 운영할 때 교육대상별 특성,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구성 등 접근방식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성평등교육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의무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다(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서울시교육청의 『2017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계획』에 따르면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는 성교육 15시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관련 포함), 금연·약물오남용예방 2시간, 응급심폐소생술 2시간이다.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주로 보건교육 시간에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연 1회, 1시간씩 이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다른 교과목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성평등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이수연 외, 2014). 현재 학교 정규교육에서 젠더교육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정규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는 성교육 의무교육시간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성평등교육 초기단계에는 폭력예방 관련 법정 의무교육과 젠더교육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폭력예방교육 역시 통합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7 중점추진과제」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분야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중심에서 ‘성인 지적 관점의 통합예방교육¹⁷⁾’으로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7c).

평등스쿨을 별도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한다면 실효성 없는 유사교육의 반복이라는 문제 제기에 봉착할 수 있다(이수연 외, 2016). 현재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과 젠더교육을 통합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예방교육에 젠더교육을 통합하는 것이 통합적인 성평등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교육은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평등교육 전략은 젠더감수성, 폭력예방, 인권, 돌봄 등의 주제별 통합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과 차별화하여 교육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강남식, 2017; 배유경, 2015). 또한 성평등교육은 여성의 사회문화적 종속을 제도화하는 관행과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 부정의(injustice)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젠더감수성, 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등을 주제별로 통합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다(강남식, 2017).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나 도덕, 윤리 과목과 같은 정규교과목에도 성역할과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17)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방식이다(여성가족부, 2017b).

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성평등교육 초기단계(약 1~2년차)에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젠더교육을 통합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2~4차시 형태의 단기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과정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생 반응 및 만족도, 교육신청기관 및 강사 의견, 교육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교육 장기과정은 단기과정 결과를 토대로 젠더감수성, 폭력예방, 인권 등의 주제별 통합과정 또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대상별 성평등교육 단기과정 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구성을 예시로 들면 ■표 V-7■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젠더교육을 통합해서 2시간 과정을 구성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의 연령은 3세에서 7세까지로 주요 집중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도 이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장미혜 외, 2015). 이처럼 유아기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2시간 과정을 약 4~5회 차시로 나누어 다회차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은 성폭력예방 및 가정폭력예방과 젠더교육을 통합하여 4시간 과정을 구성한다. 학교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씩 2회 교육을 진행하거나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4시간을 연속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서 교사교육은 젠더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2시간 교육으로 운영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규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집합교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여성안심대책 및 안전정책 관련 활동가들은 성폭력예방교육과 젠더교육을 통합하고, 활동가들의 직무교육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표 V-7■ 교육대상별 성평등교육 초기단계 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구성(예시)

구분		세부교육대상	교육프로그램 구성방법	교육시간
학교	유아	- 어린이집 - 유치원	젠더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통합	2시간
	청소년	- 초·중·고등학생	젠더교육,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통합	4시간
	교사	- 초,고등학교 교사	젠더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통합	2시간
활동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여성안심보안관 - 지하철보안관 - 학교보안관	젠더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통합	2시간

3.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안)

1) 추진방향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평등스쿨 운영과 같은 직접교육은 지양하고 평등스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추진전략으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학교·일터·일상에서의 성평등교육 대상별 접근 및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전개해 나간다. 부처간 및 교육기관별 협력과 자문기구로 교육자문위원회 운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자문위원회는 재단 내부에 설치하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젠더교육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은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연구 및 조사, 맞춤형(특성화) 강사양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한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시범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교육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개선점 도출에 필요한 시범교육을 일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등스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서울시 수탁과제가 아닌 재단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V-2 |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 방향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조사	특성화 강사양성
추진 과제	-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 교육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재개발	- 교육대상자의 요구도 및 성인지 수준 조사 - 교육효과성 평가 - 성인지교육의 통합적 운영체계 - 교육사례 연구	- 교육대상 및 과정별 특성화 강사 양성 - 강사보수교육
추진 전략	생애주기별 젠더교육 지원	- 생애주기별 성평등 이슈별 접근 - 젠더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해와 삶속에서 실천 연결 - 성인지적 통합교육 중심 접근	
	유관기관 협력	- 서울시, 여성가족부, 서울시교육청, 젠더교육기관 (단체) 등과 협력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방향과 연계	- 학교, 일터, 일상에서의 성평등교육 대상별 접근	

2) 주요 기능 및 역할

(1)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성평등은 고정된 개념이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젠더관계와 젠더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컨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배유경, 2015).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은 여성학 전문가, 성평등교육 관련 전문단체 및 활동가 등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교육현장의 역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성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2년에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3년 아동기와 청소년기, 2015년 유아용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 양성평등의식교육 및 학교 성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용구성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용 교육프로그램(2015)은 동아로 배우는 성인권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인권, 성평등, 관계와 소통, 성적인 위험 등 총 5개 분야, 17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아동기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2013)은 외모차별, 가족 내 평등, 성역할 고정관념, 인권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년별로 교육주제를 동일하게 하고, 각 단계별 발달 수준과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수업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기 프로그램(2012)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1부), 남성의 사회화(2부), 여성의 주류화(3부), 여성적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4부), 성, 사랑, 그리고 결혼(5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성인기 프로그램(2012)은 남성의 성적 정체성 찾기, 소통하는 양성문화, 함께 하는 일 등으로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교육차시가 길고,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일부 사례는 오래된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유아용 성인권교육은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 청소년, 성인기 프로그램은 양성평등의식 개선 프로그램만 구성되어 있어 평등스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전략적 교육대상별로 연령별, 수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폭력예방교육과 젠더교육을 통합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표 V-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의식교육 및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예시)

구분	영역	제목	주요내용
유아	성평등한 또래관계	우리는 친구	- 놀이를 통해 평등한 성역할 알기 • 성별 고정관념 • 평등한 성역할 이해
	다양성 이해	달라도 좋아	-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기 • 다양성의 이해(생김새, 가족의 형태 등)
초등학생	인권	다름의 발견, 평등의 시작!	- 차이와 차별, 인권에 대한 이해 •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해 • 인권 개념 이해 • 평등한 학급 만들기
	외모 차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외모와 관련된 차별에 참여하지 않기 • 외모와 관련된 차별과 편견 • 자아 존중감 • 외모 차별에 대처하는 자세
	가족 내 평등	함께 살아가는 법, 나누는 것의 즐거움	- 가족 내 성역할과 평등한 가족의 모습 • 평등한 가족의 모습 • 가족 내 성역할의 이해 - 가족 역할분담의 필요성 - 가족 역할 나눔 체험(예: 평등한 밥상 차리기)
청소년	차이/차별 양성평등	차이와 차별	-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정의, 직업에서의 성고정관념 • 젠더의 개념 • 성평등의 정의 내리기 • 차이와 차별의 개념 • 직업 속 성 고정관념 • 나의 성별고정관념 확인하기
	사회 문화 속 성평등	사회문화 속의 성평등 자기소개서? 상품소개서?	- 성 상품화와 대중매체, 여성 남성의 이미지 • 대중매체와 성 고정관념 • 성 상품화의 개념과 이해 • 성 상품화에 대처하는 자세 및 대안
	성 정체성	답게! 답게! 나답게!	- 성에 대한 정의와 바람직한 여성상, 남성상? • 성인지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 및 이해 • 성 정체성 • 성평등 정의 내리기
	성평등한 진로선택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 성차별의 이해와 성차별에 대한 대처 • 성별 직업분리 • 직업에서의 성 차별에 대한 이해 • 자유롭게 직업선택하기

구분	영역	제목	주요내용
성인	성평등이해	다른 성 이해하기	- 양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의 이해 •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고정관념 • 성 차별적인 제도 및 법
		나의 남성 /여성 이미지	- 성별 고정관념과 해소를 위한 방안 • 성별 이미지 고정관념 •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영향
	함께 하는 일	일과 가정의 양립	- 직장여성들에게 일·가정 양립은 이중부담임을 알고 해결 방안 모색
		전업 주부의 공동재산권	- 전업주부의 노동도 사회적 노동과 같이 지불되어야 할 가치임을 알고 공동재산권 갖기
		돌봄과 보살핌 노동, 남성 참여	- 돌봄과 보살핌 노동에 남성 참여 높이기
교사 ¹⁸⁾	양성평등	두드림, 양성평등	- 양성평등 왜 필요한가? - 여성, 젠더관점으로 섹슈얼리티 이해하기 - 젠더개념 바로 보기 - 성인지 감수성 이해 - 양성평등에 대한 법과 정책
		양성평등 모두를 위한 것	-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역사 속 양성평등 - 젠더와 사회구조 - 가족의 탄생 - 미디어 속의 외모지상주의 - 청소년 지금은 연애중 - 교사들은 양성평등한가?(생활지도편)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2015)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및 성인권교육, 원격연수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재구성

한편, 교육대상별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은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매뉴얼화된 교육에 집중하면서 문제 현상 이면에 있는 성불평등한 젠더관계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해숙 외, 2013). 따라서 성평등교육 통합 콘텐츠 개발시에 폭력예방교육은 젠더관계 및 권력관계,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등 근본적인 폭력 발생 원인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연수원 양성평등모두를 위한 것, 두드림 양성평등 참조
<https://egenteacher.kigepe.or.kr/MainPageAction.do?cmd=main>

다. 폭력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 연결시키는 이유는 폭력이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지 관점에 기반을 둬으로써 교육생들이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현미, 2009).

둘째, 성평등은 남녀의 평등한 의사결정, 정치, 경제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강조해야 한다(강남식, 2017).

셋째, 생애주기별 성평등 이슈를 염두에 두고 이를 교육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2012).

- ① 유아기는 흉내 내기 및 따라 하기가 주요 학습전략이다. 따라서 성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분법적 성역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 ② 아동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다른 성역할을 체험하는 시기이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 ③ 청소년기는 남녀 간 성평등 의식 수준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성별 분업 현실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이다.
- ④ 성인기는 결혼한 경우 부부 간의 가사분담과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성인 초기 여성은 생리통과 질염 등의 여성 질환을, 중년기 여성은 폐경기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개인, 가족 관련 이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 높은 경력단절을 겪게 된다¹⁹⁾. 성인 후기에는 퇴직과 인생 이모작 준비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19) 서울시 경력단절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33%)의 두배인 67%였으며,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중 34.2%의 여성이 경력단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2014.12.23.)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23/story_n_6368820.html

표 V-9 생애기별 성평등 주요 이슈

구분	생애주기별 성평등 주요 이슈
유아기	- 성고정관념의 무비판적 수용 - 이분법적 성역할 습득 가능성
아동기	-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다른 성역할 체험 -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의문제기
청소년기	- 남녀 간 성평등의식 수준에서 격차 발생 - 성별 분업 현실과 진로 선택 고민
성인기	- 결혼한 부부의 경우 가사 분담 갈등 - 여성의 경력단절, 건강 - 퇴직, 인생 이모작 준비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재구성.

(2) 강사양성 및 관리

자질 있는 전문강사 양성과 체계적인 관리는 성평등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평등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연령별, 대상별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하다(장미혜 외, 2014).

김선희 외(2010)가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강사들이 교육하기 가장 어려운 교육대상자 집단은 장애인과 같은 특수 집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유아, 교사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교육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용어 사용이 힘들고 강의 내용에 대한 반응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보이며, 교육대상이 교사라는 사실에 기인한 강사 자신의 자신감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유아 및 저학년 초등학생, 교사와 같이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강사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활용하여 강의를 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전문강사 양성 역시 필요하다.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를 활용해 성평등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강사는 부족한 상황이다(이수연 외, 2014).

현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분야별로 위촉된 전문강사를 살펴보면, 성폭력예방교육 207명, 성희롱예방교육 170명, 양성평등교육 104명, 가정폭력예방교육 95명, 성매매예방교육 77명, 폭력예방 통합교육 36명이다. 성폭력예방교육 강사가 가장 많고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는 가장 적다.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는 폭력예방(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예방) 4개 분야에 모두 위촉되어 활동하는 강사이나 젠더교육 전문강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표 V-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분야별 전문강사 위촉 현황

(2017년 9월 기준)

구분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	성별영향 분석평가
서울	207명	77명	95명	104명	170명	36명	18명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센터²⁰⁾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강사 양성은 폭력예방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예방)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대상별 강사양성은 진행되고 않고 있다.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아래 표 V-11에서 살펴보면, 분야별 공통 기본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이해’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강사 양성교육 시간(총 80시간) 중 ‘성인지감수성 이해’ 교과목은 3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세부 교육내용은 섹스와 젠더의 구분, 젠더의 특성, 성역할·사회규범·성별고정관념 개념, 성별고정관념이 개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주로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a). 더욱이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양성과정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별도 과목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젠더감수성 훈련은 매우 부족하다.

20) 강사뱅크(http://gangsaa.kigepe.or.kr/front/special_lecturer_bank/search/list.act) 2017. 9. 8. 검색

표 V-1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성폭력 예방교육	기본과정	- 성인지감수성의 이해 - 인권과 성인권 - 페미니즘과 젠더 - 통계로 보는 젠더 - 젠더기반폭력의 이해 - 성문화와 담론 - 한국사회 젠더지형의 성찰	3일 (22h)	강의 토의
	전문과정	- 성폭력예방을 위한 발자취 - 성폭력과 섹슈얼리티 - 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이해 - 성폭력 피해자의 이해와 통합적 지원체계 -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특성과 이해 - 성폭력 가해자의 특징 - 성폭력예방교육의 특성과 방향 - 필기시험	3일 (22h)	강의 토의
	강의력 향상과정	- 성폭력예방정책의 이해 - 대상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 강의안 작성법 - 교육대상 분석 및 강의안 작성 실습 - 성폭력과 대중문화 - 대상별 강의현장 대응전략 - 모니터링을 통해 본 성폭력예방교육 현장 - 강의력 코칭	3일 (22h)	강의 토의
	강의실전 과정	- 전문강사의 역할과 윤리 - 강의시연 및 평가	2일 (14h)	강의 실습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본과정	- 성인지감수성의 이해 - 인권과 성인권 - 페미니즘과 젠더 - 통계로 보는 젠더 - 젠더기반폭력의 이해 - 성문화와 담론 - 한국사회 젠더지형의 성찰	3일 (22h)	강의 토의
	전문과정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발자취 - 한국의 가족문화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 - 국내외 가정폭력 관련 지원체계 이해 - 가정폭력 특성 이해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3일 (22h)	강의 토의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 가정폭력 관련 법과 사례 - 가정폭력예방과 부모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의 특성과 방향 - 필기시험		
	강의력 향상과정	- 가정폭력예방정책의 이해 - 대상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 강의안 작성법 - 교육대상 분석 및 강의안 작성 실습 - 미디어, 젠더, 가정폭력 - 대상별 강의현장 대응전략 - 모니터링을 통해 본 가정폭력예방교육 현장 - 강의력 코칭	3일 (22h)	강의 실습
	강의실전 과정	- 전문강사의 역할과 윤리 - 강의시연 및 평가	2일 (14h)	강의 실습
폭력예방 통합교육	기본과정	-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방향 설계 -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폭력예방 통합교육 방향 - 강의안 작성 실습 발표, 코칭	2일 (15h)	강의 토의 실습
	심화과정	- 전문강사의 역할과 윤리 - 강의시연 및 평가	1일 (7h)	강의 실습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안내서.

성평등교육 강사로서의 관점과 자세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젠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별구조 등에 대한 체계적, 이론적 이해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젠더교육 강화를 위해 강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여성주의 관점, 인권, 젠더이슈 등이다(김선희 외, 2010). 강사 대상 젠더교육 프로그램 예시로 들면 ■표 V-12■와 같다.

표 V-12 강사양성 교육과정 중 젠더교육 프로그램 (예시)

구분		세부내용
여성주의 인식론	여성주의 관점	- 페미니즘/여성주의 개념, 관점 - 여성주의 이론 개관 - 여성주의 실천으로서 성평등교육
	여성과 인권	- 인권관련 국제협약, 법률 - 젠더관점과 인권 개념 - 인권감수성 점검 - 남성성에 대한 오래된 편견 - 성불평등 제거를 위한 젠더분석법
한국사회와 성평등	성차와 성별	- 성차와 성별 개념 이해 - 성역할 사회화와 여성/남성의 탄생 - 차이와 차별의 문제
	섹슈얼리티의 이해	- 섹슈얼리티 및 주요 개념 이해 - 섹슈얼리티 관련 이론 개관 - 성각본 분석과 나의 성인식 점검
	한국사회의 성문화	-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사회와 섹슈얼리티의 역사적, 사회적 구성 - 섹슈얼리티, 가족, 노동의 교차점 - 현대사회 성문화와 성적 주체
	가족과 성별권력	- 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 여성/남성의 가족 경험과 성별권력 - 가부장적 가족과 폭력의 문제
	노동시장과 성차별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성차별 - 여성노동자의 경험 - 성적서비스와 감정노동
도전과 실천	여성운동과 실천	- 서구 여성 운동사 소개 - 한국 여성 운동사의 흐름 - 여성운동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
	국가와 여성정책	- 국가와 젠더에 대한 이론 및 관점 -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관계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사회변화	- 여성문화에서 재현되는 여성 주체 - 여성주의와 여성의 임파워먼트 - 여성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변화
생활 속 젠더 이슈		- 건강과 젠더 - 과학, 의학과 젠더 - 드라마와 성평등 - 뉴스, TV 광고가 보여주는 젠더 표상 - 문화가 만들어 가는 성평등 - 데이트 폭력

자료: 김선희 외(2010),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가 양성실태 및 표준교육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연수원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내용 재구성.

한편,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의 자격과 역량은 매우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동료 평가, 수강생 평가, 강의 의뢰 기관 평가,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강사의 자질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강의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배유경, 2015).

(3) 성평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성평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성평등교육의 효과성 분석, 성인 지 의식조사 등 교육 관련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성평등교육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배유경, 2015).

대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대학교 교내 성평등교육 확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서 대학 내 성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과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대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성평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교 차원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성평등교육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현황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성평등교육의 추진방법과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이수연 외, 2014).

3)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 부서 설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7년 ~ 2010년까지 교육전담 부서가 별도 조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교육담당 부서 명칭은 2007년 교육문화실, 2008년 교육팀, 2009년 교육연수팀, 2010년 교육연수팀이다. 부서인원은 관리자를 제외하고 정규인력 3명, 지원인력 1~2명으로 교육기획 및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민선 5기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부응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해 2010년 9월 15일 조직이 개편되었다. 국내와 국제 영역에서 성인지 및 성주류화의 선도적인 역할 실행을 목적으로 재단 내에 성주류화센터가 신설되었으며,

교육 담당 부서가 폐지되고 교육업무는 성주류화센터 내로 흡수되었다.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교육 관련 추진 부서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평등교육은 성주류화지원센터와 보육팀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다. 성주류화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이 중심축이며 공무원 성인지 정책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연구과제²¹⁾ 일부가 진행되어 있다. 한편, 보육팀에서는 아동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육팀의 학부모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성주류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교육대상 등이 중복되고 있다. 이처럼 성평등교육의 부서별 분산 운영은 교육대상 및 내용 중복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을 내포하게 된다.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조사, 강사양성은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업무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평등스쿨 인프라 구축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현재 재단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성인지정책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아동 및 학부모 성폭력예방교육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조사, 강사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등스쿨 지원 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가능하게 하여 성평등교육 전반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평등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젠더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여성정책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성평등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성주류화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7년도 연구과제는 성주류화지원센터 활성화방안, 성인지 통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지표 연구 등이다.

>>> 참고문헌

- 구정화(2011), 『초등 사회교과서의 성평등 내용 단원과 다른 단원간 성평등 관점의 일관성 문제』, 시민교육연구 제43권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3), 『2013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교육부(2015a), 『양성평등교육 매뉴얼』.
- 교육부(2015b),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교육부(2017), 『교과(학교) 교육과정과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연계 운영방안(중·고등학교)』.
- 권순형(2016), 『한국사 교과서 고려시대 여성 관련 기술에 대한 분석과 제안』, 여성과 역사 제24집.
- 김고연주(2016), 『여성위험사회,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여성안심특별시 토론회자료.
- 김대용(2017),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 인식과 그 비민주성』, 교육철학연구 제39권 제1호.
- 김대유(2016),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쟁점과 논의』,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1).
- 김선희·손영숙·이명선·김영은(2010),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실태 및 표준교육안 개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봉화(2014), 『공무원의 양성평등 의식과 실행의지 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제3권 제1호.
- 김어진(2016), 『중학교 음악교육에서 음악과 역사의 통합교육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미(2016),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26개 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32(2).
- 김양희·김선옥·조우철·민무숙·장영아·김은희(200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윤정·이수희·손상희(2014),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 변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4 Vol.26.
- 김자미·김용·이원규(2010), 『원격교육 학습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1, No 4.
- 김하나(2017), 『중학교 사회교과서 지리영역에 재현된 성차별주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현미(2014), 『젠더와 사회구조』, 젠더와 사회, (사)한국여성연구소.
- 김현숙(2012), 『우리나라 학교보건교육의 역사적 변천 및 발전방안』, 한국학교보건학회 25(2).
- 박종모(2010), 『초등 도덕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78권.
- 서경현·김유경·정구철·양승애·김보연(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15(4).
- 서영민·이영준(2013), 『초등학교 로봇프로그래밍 교육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통합교육과정연구 제7권 1호.
- 서울시(2017a), 『17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환경 구축사업(협치)추진계획』.
- 서울시(2017b),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계획』.
- 서울시(2017c),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
- 서울시(2017d),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서울시교육청(2017a), 『학교 성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 서울시교육청(2017b), 『학교 성폭력 긴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서울시교육청(2017c),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계획』.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2017), 『2017년 연수운영계획』(홈페이지 게시용, 검색일 2017. 8. 1.)
- 안상수·김인순·최윤정·김금미·최연혁(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연구(IV):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야기(2012),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3).
- 양정혜(2012),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5권 제1호.
- 여성부(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 여성가족부(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판) (2008~2012)』.
-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 여성가족부(2014),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5), 『동화로 배우는 성인권(유아용) 교수·학습안』.
- 여성가족부(2017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 여성가족부(2017c), 『2017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 여성가족부(2017d), 『2018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메뉴얼』.
- 오경화(2015), 『양성평등의 관점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식사논문.

옥일남(2015a),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개발연구』, 교육부.

옥일남(2015b),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의 구현 양상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 47권 1호.

유진숙(2015), 『성인지적 성심리교육이 자기성결정권 강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31권.

윤문정·승윤희(2012),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의 삽화 비교 분석』, 예술교육연구 2012 제10권 제1호.

윤지현(2015), 『양성평등과 일가족양립 관점에 근거한 초등 실과 검정 교과서 나와 가정생활 단원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제15권 제5호.

이갑숙·정미미(2007), 『양성평등교육의 수요 및 통합관리방안 연구』,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이갑숙(2010),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경험 및 태도 조사: 대전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0(2).

이규영(2015), 『여자 중학생들의 학교 성교육 경험, 성지식 및 성교육요구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5(3).

이보미(2015), 『성평등시민강좌 최종결과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수연·이혜림·강혜란·김미경·김하얀(201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김경희·강혜란·신정민(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은숙·강희순(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제20권 제1호.

이정대·이선정·신효식(2010),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0 Vol.22.

이정렬·김은경·오이금·지호영·조선녀·정문희(20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 실태』, 한국보건학회 23(2).

이화숙(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 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박사논문.

이혜정(2013),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교육종합연구소.

장미혜·강민정·김난주·박건표(2014), 『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여성가족부.

장미혜·박건표·전미현·정지연(2014), 『여성폭력 예방 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윤덕경·천재영(2015),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폭력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영철·노성희·박재용·오남석·윤희지(2015), 『3,5세 남녀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정숙남·허균(2014), 『지방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현황 및 실태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4(B).
- 정현미(2009), 『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법제화 방안』, 법학논집(2009) 14(2).
- 정현미(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2012) 20(20).
- 조영미·장진희·이수연(2015), 『서울시 여성정책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자경(2016), 『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착수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자경(201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최종결과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혜련(2017), 『전문강사를 위한 성인지감수성의 이해(2017 전문강사 공통기본과정 교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정혜은(2016),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 여성사 서술과 개선 방향』, 여성과 역사 제24집.
- 최문선(2011), 『사회과 예비 교사의 젠더인식과 교사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0(1).
- 최자은(2014), 『공공분야 성인지정책교육 최종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최주혜(2016),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최종 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하혜숙(2010), 『대학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부정적 정서가 미치는 영향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권 1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a),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청년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b),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성인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c),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노인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3a),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아동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3b),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청소년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6), 『2016년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사업결과보고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a), 『2017 전문강사 공통기본과정 교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b), 『2017 하반기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c), 『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안내서』.
- 홍선영·홍미영·장민지(2012),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신문기사, 보도자료, 기타

강남식(2017),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 최종심의 의견

국민권익위원회(2017), 보도자료(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2017. 2. 8.)

교육부(2015), 보도자료(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2015. 9. 23.)

박혜자(2015), 보도자료(초중고 성폭력 느는데, 뒷걸음치는 성교육담당교사 연수, 2015. 10. 8.)

서울메트로(2017), 보도자료(지하철 범죄 꼼짝마! 지하철 보안관 188명으로 확대, 2107. 4. 11.)

서울시(2012), 보도자료(서울시, 여성정책에 시대 변화 담아낸다. 2012. 7. 19.)

서울시(2013), 보도자료(서울시, 시민7만명 대상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 2013. 5. 21.)

서울시(2014), 보도자료(지하철 불안 이제 그만, 서울시 안심지하철 대책 발표, 2014. 12. 30.)

서울시(2016a), 보도자료(서울시, 몰카 점검단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첫 모집, 2016. 6. 17.)

서울시(2016b), 보도자료(서울시, 지자체 최초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꼼짝마!, 2016. 8. 1.)

서울시공고(2017-120호),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수행기관 모집공고.

서울시공고(제2017-148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시공고(제2017-1777호),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교육청(2015), 보도자료(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 발표, 2015. 9. 23.)

서울시교육청(2017), 보도자료(학교 성폭력예방, 근절 위한 긴급실태조사 결과, 2017. 2. 27.)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발표, 2016. 8. 19.)

여성가족부(2015b), 보도자료(4대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포함 첫째 안정적 출발 보여, 2015. 9. 2.)

이경진(2016),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내용, 성고정관념 재생산·고착화, KBS NEW(2016. 7. 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2758>. 2017. 6.13. 검색

이상미·정인태, 성교육 표준안(2015), 논란의 시작, EBS NEWS.(2015. 9. 5.)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16422>. 2017. 6. 13. 검색

최민지(2016), 성교육표준안에 맞지 않다 교사 700명 연수 중지한 교육부,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0412072632783&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2017. 9. 15.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Equality School Operation Plan - Focus on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eoul -

Cho Ja khyung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practicing new gender relations and gender ord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1999,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largely shared. Based on this awareness, various form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and private businesses, schools and the public are being promoted. However, our society continues to have patriarchal culture and awareness and gender discrimination practices in daily life, and the resistance to and grievance against gender equality and the problem of misogyny are also serious.

After the murder of a woman in the toilet near Gangnam Station on May 2016,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of the public for improving gender equality at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by enhancing publicity on sex discrimination and misogyny. As a result, the city of Seoul has been promoting customized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culture to strengthen gender equality in schools, workplaces and everyday life.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operating system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mid- and long-term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ation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eoul and to seek a plan for the operation of 'Equality School' as an improvement plan.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eoul city. In addition, as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eoul is centered on school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t the school site,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equality school administration and infrastructure building as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used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study, data search, expert interview and the operation of conference system(internal TF team) in order to prepare an equality school management plan.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activation and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Seoul.

2017 여성정책연구-24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

- 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조자경
발행일 2017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004(대)
ISBN 979-11-87956-69-3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